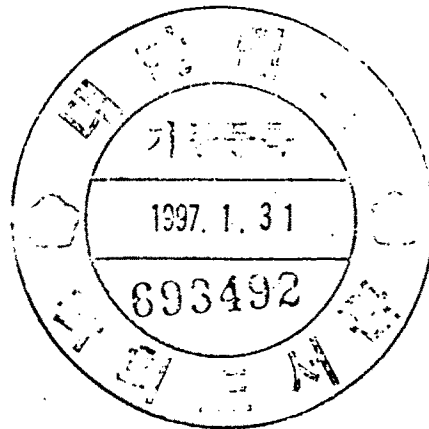


1997년 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6. 11. 18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총6권중 제6권



농 립 부

##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시책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7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19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7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 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AFFIS를 통하여 PC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정보센터(전화 02-589-2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례

##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	1
1. 배경 .....	3
2. 특징 .....	5
3. 보완사항 .....	6
4. 해설 .....	12
제1장 총칙 .....	12
제2장 자율사업 .....	16
제3장 공공사업 .....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	23
제5장 보칙 .....	25
[별표]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도 .....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	27
1. 배경 .....	29
2. 농림사업자금 현황 .....	29
3. 주요골자 .....	30
4. 해설 .....	31
III. 시책안내 .....	43
1. 42조원 지원계획 .....	45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	47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	49
4. 농림사업 평가제도 .....	56
[참고자료] .....	57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877호) .....	59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875호) .....	104

##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	117
1. 영농규모적정화(자율) .....	119
2. 농약안전사용장비보급(자율) .....	150
3. 토양개량사업(자율) .....	158
(토양개량제공급, 객토)	
4. 감자원종망실재배농가지원*(자율) .....	179
5. 발기반정비(공공) .....	187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	203
7. 일반경지정리(공공) .....	218
8. 배수개선(공공) .....	226
9. 수리시설개보수(공공) .....	248
(농조수리시설개보수,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농조저수지준설)	
10.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	297
11. 지표수보강개발(공공) .....	325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	347
13. 대구획경지재정리(공공) .....	366
14. 소규모농업기반시설및농정시책추진(공공) .....	384
(농지관리위원회운영, 공동·항공방제, 지하수개발, 지표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한우쌍자생산, 개량물꼬보급, 지역특화작목개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15. 서남해안간척(공공) .....	476
16. 농지정보화(공공) .....	493
17.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지원*(공공) .....	497
18. 인공씨감자대량생산시설(공공) .....	502
II. 농업기계화 .....	509
19. 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	511
20. 생산자조직농기계구입지원(자율) .....	576
21. 농기계보관창고설치(자율) .....	596
22. 농기계사후관리(공공) .....	606
23. 시설농업기자재생산시설및생산비축지원(공공) .....	627
24.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공공) .....	635
III. 생산및유통개선 .....	639
25. 미곡종합처리장(자율) .....	641
26. 임도정공장시설대체(자율) .....	667
27. 직접지불제실시(공공) .....	675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	677
28. 부적지감굴과원정비(자율) .....	679
29.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공공) .....	686
30. 한국자생란보존육성(공공) .....	690
31. 버섯종균점종원생산보급시설(공공) .....	692
32. 화훼계열화(공공) .....	699
II. 생산및유통개선 .....	703
33. 과실생산유통(자율) .....	705
34. 시설채소생산유통(자율) .....	723
35. 양념채소생산유통(자율) .....	746
36. 고랭지채소생산유통(자율) .....	759
37. 화훼작물생산유통(자율) .....	770
38. 특용작물생산유통(자율) .....	791
39. 인삼생산지원(자율) .....	808
40. 농산물규격출하(자율) .....	824
41.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자율) .....	834
42. 과수대표생산(자율) .....	850
43. 인삼종합처리장(공공) .....	859
44.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공) .....	866
45. 농산물공판장건설(공공) .....	883
46. 꽃박람회개최(공공) .....	896
4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	897
48. 과실·화훼판매촉진(공공) .....	903
49.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	907
50.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	920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 수출활성화사업, 수출홍보사업, 해외시장정보조사)	
51. 농산물무역진흥센터건립(공공) .....	947
52. 수출농산물수송체계지원(공공) .....	952
53. 농산물물류센터건설(공공) .....	955
54. 농산물포장센터건설(공공) .....	969
55. 생산자단체출하조절(공공) .....	989
56. 공동규격출하지원(공공) .....	994
57. 출하촉진자금(공공) .....	1008
58.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공공) .....	1013
59. 채소가격안정사업(공공) .....	1018

##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I. 사육기반확충 .....	1025
60. 한우경쟁력강화(자율) .....	1027
61. 젓소경쟁력강화(자율) .....	1041
62. 돼지경쟁력강화(자율) .....	1051
63. 닭경쟁력강화(자율) .....	1061
64. 기타가축육성(자율) .....	1072
6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율) .....	1081
66. 축산분뇨처리시설(공공) .....	1099
67. 축산단지조성(공공) .....	1129
68. 가축계열화(공공) .....	1140
II. 생산및유통개선 .....	1163
69.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공공) .....	1165
70. 도축도매시설개선(공공) .....	1176
(축산물공판장건설, 위생도축시설확충)	
71. 가공판매시설및운영(공공) .....	1188
(가공직판장설치, 계란가공시설, 한우전문판매점설치, 냉장육전문판매점시설개선)	
72. 축산물품질향상및안전성강화(공공) .....	1223
(돼지고기품질개선, 규격돈구매자금, 축산물등급판정,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폐사축위생처리,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부정축산물유통지도단속, 한우고급육생산기술개발, 재래닭품질육용화, 가축개량전산망구축)	
73. 소수급관리전산화(공공) .....	1325
74. 축산경영여건개선(공공) .....	1334
(경영상담지도, 양축농가해외연수, 축사표준설계도개발보급, 축산자조금, 특수가축 공제시범사업, 가축박람회, 교육홍보사업, 축분처리용膨軟왕겨생산시설)	
75. 축산업협동조합육성지원(공공) .....	1369
76. 사료제조시설설치(공공) .....	1373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음식찌꺼기사료화시설)	
77. 축산기자재생산시설(공공) .....	1385
78. 학교우유급식(공공) .....	1391
79. 사료원료수입(공공) .....	1397
80. 조사사업(공공) .....	1401
(축산물가격및유통현황조사, 축산관측, 축산물생산조사)	
III. 소득원개발 .....	1411
81. 축산경영자금(공공) .....	1413
IV. 가축개량 .....	1417
82. 소정액생산및공급(공공) .....	1419
(한우개량단지운영, 한우정액생산공급, 젓소정액생산공급, 가축개량신기술보급, 가축인공수정사업)	
83. 종축등록및검정(공공) .....	1458
(종축등록, 젓소산유능력검정, 돼지능력검정, 닭경제능력검정, 가축개량협의회운영)	
84. 전문종돈업육성(공공) .....	1476
V. 기타사업 .....	1485
85. 수의기술교육관건립(공공) .....	1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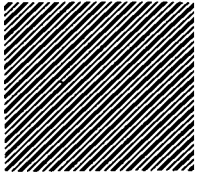
##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및유통개선 .....	1489
86.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자율) .....	1491
87. 농산물가공산업육성(공공) .....	1501
II. 기술개발및정보화 .....	1559
88.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자율) .....	1561
89.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	1568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지역특화시범사업)	
90. 농림수산정보화(공공) .....	1581
91. 농림수산기술개발(공공) .....	1585
92. 기술지도사업*(공공) .....	1595
(새기술보급및환경보전농업시범사업,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농업학습단체육성및품목별전문교육)	
III. 인력육성 .....	1627
93.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	1629
94. 전업농육성(자율) .....	1664
95. 선도농업경영체육성(자율) .....	1697
96. 농업인자녀학자금(공공) .....	1714
97.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공공) .....	1726
98. 자영농고육성(공공) .....	1733
99. 농업전문대학지원(공공) .....	1736
100.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공공) .....	1739
IV. 소득원개발 .....	1743
10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	1745
102. 농촌특산단지육성(자율) .....	1810
103. 농공단지육성(공공) .....	1843
104. 농촌특산품판매장설치(공공) .....	1859
105. 한계농지정비(공공) .....	1867
106. 농업경영자금(공공) .....	1883
V. 생활환경개선 .....	1889
107. 식생활개선교육홍보(공공) .....	1891
10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	1895
(일반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농촌마을하수도설치)1951	
109. 농촌생활용수개발(공공) .....	1951
VI. 기타사업 .....	1981
110. 농업인의날행사지원(공공) .....	1983

## 제6권 [임업및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	1985
111.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	1987
112. 사유림협업경영(공공) .....	1993
113. 임도시설(공공) .....	1997
114. 영림계획(공공) .....	2001
115.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공공) .....	2005
116.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	2010
117. 임업기술보급(공공) .....	2012
(임업기술지도, 임업기술개발지원)	
II. 생산및유통개선 .....	2021
118. 임목생산(자율) .....	2023
119. 임산소득증대(자율) .....	2028
(표고생산기반조성, 조경수분재생산, 단기소득임산물생산)	
120. 임산물가공지원(자율) .....	2047
(임산물이용가공원자재구입,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산지가공공장설치, 꺾이용가공시설, 임산물저장시설)	
121. 표고종균생산시설(공공) .....	2067
122.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	2070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간벌재활용장비, 임산물유통시설설치)	
123. 합판및보드류시설지원(공공) .....	2086
III. 인력육성 .....	2093
124.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자율) .....	2095
125. 임업전문인력양성(공공) .....	2104
(임업기능인훈련, 임업기능인영림단장비지원)	
126.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	2116
IV. 환경임업육성 .....	2121
12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	2123
(자연휴양림조성, 산림박물관건립및수복원조성)	
128. 산불방지대책(공공) .....	2130
129. 사방사업(공공) .....	2134
130. 산림생태보전(공공) .....	2138
(산림환경관리, 산림입지조사, 야생조수보호)	
131. 산촌종합개발(공공) .....	2150
V. 산림자원조성 .....	2157
132. 해외조림사업(자율) .....	2159
133. 산림조성(공공) .....	2167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사업, 조림용묘목생산)	
134. 산림병해충방제(공공) .....	2199





# I . 경 영 기 반 확 충

# 여 백

## 111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입니다.

### 1. 목 적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산주들에게 임업용 기계·장비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림경영의욕을 높이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산주들의 소득증대 및 임업기계화 촉진

### 2. 추진방향

- 용자지원 확대로 산주자율경영체제 유도
- 민간부문의 임업기계화 촉진
- 생산비용 절감으로 임업경쟁력 제고

### 3. 근거법령

산림법 제10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제3호.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910명 (1,029대)	57명 (142대)	25명 (46대)	28명 (41대)	60명 (60대)	740명 (740대)
사업비	계	63,234	3,017	1,557	1,517	4,286	52,857
	보조	-	-	-	-	-	-
	용자	44,264	2,112	1,090	1,062	3,000	37,000
	지방비	-	-	-	-	-	-
	자부담	18,970	905	467	455	1,286	15,857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시·군·구
- 지원대상 : 소재산주 및 산림경영자
-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내용 : 소경재 집재장비(하산장비, 상차기, 소운반장비)
  - 융자조건
    - 금 리 : 연 3%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 한 도 액 : 1억원이내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8명	1,517	1,062	-	1,062	-	455
강 원	1명	96	67	-	67	-	29
전 북	2명	76	53	-	53	-	23
전 남	4명	102	72	-	72	-	30
경 남	21명	1,243	870	-	870	-	373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대상자 선정 : 시·군·구

○ 용자 지원 : 시·군임업협동조합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961-2415)

○ 시·도 : 녹지과 또는 산림과

○ 시·군 : 녹지과 또는 산림과

○ 임협중앙회 : 금융부(02-416-9421)

○ 시·군임협 : 사업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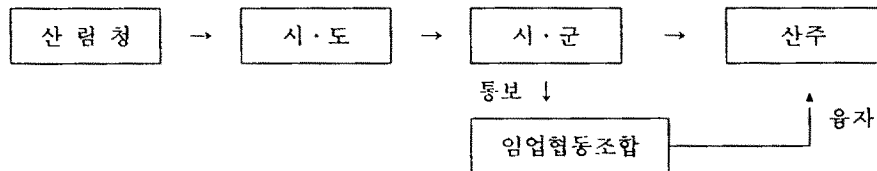
○ '97산림경영장비 지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된자.

라. 사업시행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법

- 사업수행주체 : 시·군·구

- 사업집행절차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장·군수, 관할 임업협동조합장

○ 사후관리절차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장비구입활용 및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점검

나. 보고사항

○ 사업추진실적 보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읍·면·동 사업추진 상황을 다음서식에 의거 반기 종료 익월 10일까지 실적을 산림청(산림경영과)에 제출

※ 보고서식

(금액 : 천원)

시·도 (시·군)	품명	수량	단가	금 액			수 혜 자			비고	
				계	읍자	자담	주소 성명	산림 면적	경영실적		
									계		조림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녹지과, 산림과)

나. 신청자격(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산별시범단지내의 산림소유자
- 임업진흥촉진지역내의 산림소유자 및 경영자
-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한 정주 생활권 개발지역내의 산림소유자

(2) 우선순위

- ① 독립가
- ② 임업후계자
- ③ 산림경영자
- ④ 일반소재산주

다. 신청절차

- 선정권자 : 시장·군수
- 선정절차 : 산주신청→심사(시장, 군수)→선정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관할 임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
- 선정권자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수행능력, 자부담능력, 영림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 지원 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대출신청 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 소유권 확인서 1부

마. 기타사항 (유의사항)

- 산림경영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및 융자
-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사업과 산림사업 융자지원의 연계추진
- 채권보전 : 융자취급기관 여신관계 규정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산림경영장비

2. 현 황

소재지	면적 (ha)	비고

※ 용자시 :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첨부

3. 세부사업 계획

장비명	수량	구입계획 (천원)		
		계	음자	자부담



112 사유림협업경영(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입니다.

**1. 목 적**

영세사유림을 대상으로 협업체를 조직·육성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주소득증대와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가. 임업진흥촉진지역(생산임지)중심으로 전국적 확대 설립
- 나. 리·동단위 협업체를 설립하여 실질적인 협업체 운영의 활성화 도모
- 다. 복합경영사업, 협업공동사업 등을 지원하여 협업체 기금조성, 회원의 결속력강화 및 회원등의 소득증대에 기여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40조 및 제109조 제1항,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515개소 (협업체)	202개소	15개소 (217개소)	15개소 (232개소)	15개소 (247개소)	268개소 (515개소)
사 업 비	계	37,231	5,249	2,330	2,401	3,893	23,358
	일반조	-	-	-	-	-	-
	농특조	26,134	4,062	1,608	1,655	2,687	16,122
	지방비	4,541	293	309	320	517	3,102
	자부담	6,556	894	413	426	689	4,134

※ ( )내는 협업체 조직 누계임.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 사업내용

- 협업체가 설립된 지역내 사유림 산주에 대한 산림사업 지도
- 협업공동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협업체 회원들의 소득증진

##### ○ 지원조건, 대상, 단가등

구 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단가	비 고
○ 경영지도사업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시·군임업협동조합	국 고 100%	인건비 운영비	일반회계
○ 산림사업	협업체 회원	자부담의30%	조림(80,840원/ha) 육림(52,720원/ha)	일반회계
○ 공동소득원사업	협업체 회원	국 고30%, 지방비30% 자부담40%	표고재배(14,250천원) 산채재배(1,500천원) 목가공(7,500천원) 임내차(6,000천원) 부산물가공(9,000천원)	농특회계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농특)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	2,401	1,655	1,655	-	320	426
○ 일반회계	-	1,336	1,336	1,336	-	-	-
- 경영지도사업	85명	1,119	1,119	1,119	-	-	-
- 산림사업	3,564ha	217	217	217	-	-	-
○ 농특회계	-	1,065	319	319	-	320	426
- 공동소득원사업	56협업체	1,065	319	319	-	320	426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 군수

- 산 립 청 : 지침시달, 사업비(국비)배정
- 시 · 도 : 시·도비 확보지원
- 시 · 군 : 사업대상지 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나. 사업담당 부서

- 중 양 : 산림청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 - 961 - 2418)
- 시·도 : 농정국 산림과(임협중앙회)
- 시·군자치구 : 산림과 (녹지과)(시·군임협)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협업체 회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을 검토 재경원에 예산신청하여 국비 소요예산 확보
  -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수립 시달
- 사업비 지원방법
  - 협업경영 사업 : 협업지도원인건비, 운영비 및 산림사업비 지원
  - 공동소득원 사업 : 협업체 기금조성 및 회원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소득 사업비 지원(표고, 산채, 임업부산물가공, 목가공, 임대차구입등)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협업체 설립확대 및 지원사업의 계속적 관리

나. 보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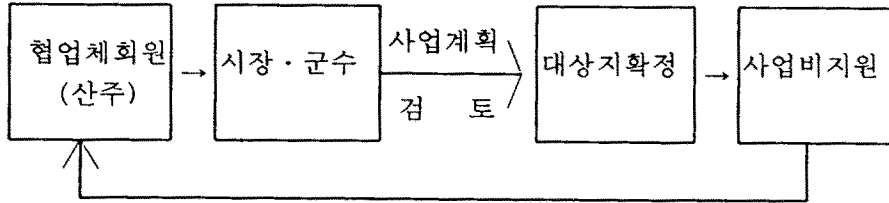
- 추진실적 : 반년보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임업협동조합)

나. 신청 자격 : 협업체가 구성된 지역내 협업체 회원

다.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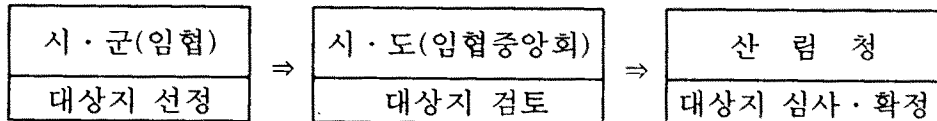


라. 구비서류

자율사업 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마.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임업진흥촉진지역의 영림계획 작성지역
  - 임업협동조합 자립도가 높은 지역
  - 협업체 설립 및 지도가 용이한 지역
  - 소재 산주의 비율이 높은 지역 등
- 선정절차



113	임 도 시 설(공공)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토목과입니다.

### 1. 목적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인 임도를 시설하여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 2. 추진방향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임업진흥촉진지역에 집중시설
- 조림, 육림, 간벌, 목재생산임지 우선 시설로 활용도 제고
- 기존도로와 연계하여 순환식, 관통식 및 지역 완결형으로 건설

### 3. 근거법령

산림법 제1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km,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17,616	3,800	1,378	1,238	1,500	9,700
사 업 비	계	1,391,030	159,901	78,645	77,484	105,000	970,000
	보 조	642,967	71,054	34,247	33,666	49,000	455,000
	융 자	103,945	16,641	10,152	10,152	7,000	60,000
	지방비	520,703	63,174	27,396	26,933	39,200	364,000
	자부담	123,415	9,032	6,850	6,733	9,800	91,000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입도시설사업  
 임업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내에 시설하는 도로 시설 공사임
- 지원대상  
 노선선정계획에 따라 책정된 노선을 통과하는 산림의 소유자
- 지원규모  
 노선선정 계획에 의거 사업량이 책정된 노선의 거리에 따라 기준단비 지원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임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km,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보조 : 농특, 읍자 : 기금)				
		계	보 조	기금읍자	지 방 비	자부담
계	1,638	77,484	33,666	10,152	26,933	6,733
입도신설						
- 보 조	1,050	65,770	32,885	-	26,308	6,577
- 읍 자	188	10,152	-	10,152	-	-
임도보수	400	1,562	781	-	625	156

※ 읍자조건 : 연리3%, 5년거치 10년상환, 읍자는 산림개발기금임.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 (02) 961 ~ 2364
- 시 도 : 농정국 산림과(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 시군구 : 산림과(녹지과)

## 다. 대상지 선정

### ○ 선정기준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임도망(노선)계획이 설정된 지역
-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협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임업경영뿐만 아니라 다목적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노선

### ○ 우선순위

-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노선으로 지역간을 연결하는 노선
- 임업진흥촉진지역의 협업경영상 필요한 노선
- 지역개발등 다목적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노선

### ○ 선정절차

-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작성된 계획 노선을 년차적으로 실행
- 지역주민 요청에 따라 다목적 이용도가 높고 임도시설이 필요한 지역 선정

## 라. 사업시행

### ○ 사업공정계획

- 1 ~ 2월 : 노선선정 완료
- 3 ~ 5월 : 측량 설계 완료
- 5 ~ 12월 : 공사 실행 및 준공
- ※ 전년도 설계지역은 해빙직후 착공

### ○ 사업계획 변경

공사 실행에 따라 변경요인 발생시 시·군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하여 실행

### ○ 사업비 지원방법(실행체계)

- 산림청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 재정경제원에 예산 신청하여 국비 소요예산 확보  
·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달
- 시·도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산림청 사업지시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시·군에 사업 지시
- 시·군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신청  
· 시·군비 확보, 사업설계 및 발주, 실행 지도 감독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후관리 원칙
- 임도를 시공함으로써 혜택을 받은 산주 및 지역주민 공동관리

### 나. 보고·기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보조사업실적보고



114	영림계획 (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 입니다.

### 1. 목 적

영림계획에 의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조림·육림·벌채·임도시설등 계획적인 산림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산림경영의 합리성 및 생산성 제고

### 2. 추진방향

- 정확한 산림조사로 현지와 부합하는 계획 작성
- 산주의 경영의사가 반영된 현실성있는 제도 운영
- 영림계획에 의한 철저한 산림사업 실행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8조 및 제73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천ha)	3,686	1,616	206	167	248	1,449	
사업비	계	25,638	7,550	1,332	1,174	1,748	13,834
	보조	8,309	3,132	550	539	807	3,281
	융자	-	-	-	-	-	-
	지방비	7,255	2,079	549	539	807	3,281
	자부담	10,074	2,339	233	96	134	7,272

※ '97예산안 사업량 167천ha는 국고보조사업 153천ha, 자력사업 14천ha이며, 사업비중 자부담(96백만원)은 순자력 사업에 대한 사업비임.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 사업내용

- 산림현황 조사내용에 따라 10년 계획기간으로 영림계획 작성
- 영림계획 작성내용
  - 조 림 : 조림수종, 면적, 수량
  - 육 림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비료주기, 천연림보육 등
  - 벌 채 : 벌채수종, 면적, 수량
  - 임 도 : 임도의 노선, 거리, 시설년도 등
  - 기 타 : 소득사업

##### ○ 지원대상

- 영림계획작성 대상년도 산림소유자
-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소유자

##### ○ 지원단가

- 영림계획작성 : 7,048원/ha(국고 50%, 지방비 50%)

##### ○ 지원조건

- 계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위주로 작성경비 보조
- 기준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50%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67천ha	1,174	539	539	-	539	96
영림계획작성	167천ha	1,174	539	539	-	539	96

※ 사업량 167천ha는 국고보조사업 153천ha, 자력사업 14천ha이며  
사업비중 자부담(96백만원)은 자력사업에 대한 사업비임.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 중 양 : 산림청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961-2418)
- 시 · 도 : 농정국 산림과
- 시 · 군자치구 : 산림과(녹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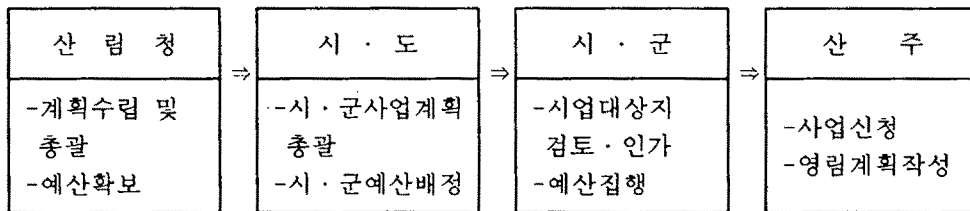
다. 자금지원 예정자

- '97영림계획 작성대상년도 산림소유자 및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소유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산주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
  - 영림계획 작성신고후 영림기술자나 임협에 위탁 작성
  - 영림기술자나 임협에 작성경비 지급

○ 사업비 지원방법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영림계획대로 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토록 하고 그 비용을 산주가 변상

나. 보고·기타

○ 년 보

- 영림계획 작성 사업계획 보고
- 영림계획 인가상황 보고
- 영림계획 작성 및 운영상황 보고

○ 분기보

- 영림계획 작성 진도 상황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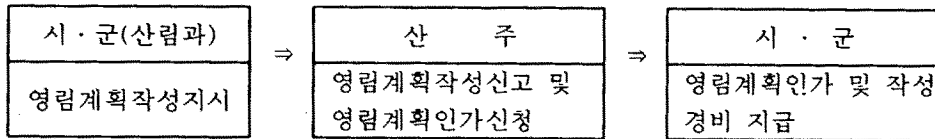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영림계획 작성 대상년도 산림소유자
- 영림계획 작성 대상지역내 영림계획 미작성 산림소유자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영림계획작성 신고서 【산림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2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임업진흥촉진지역내 사유림을 우선하여 보조하되 계획적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산주위주로 보조대상자를 선정
- 자력작성이 가능한 산주를 제외한 영세산주 산림을 우선 선정

○ 선정절차

- 영림계획미작성 및 작성 대상년도 산림소유자 파악(시·군)
- 지원대상 산주선정, 영림계획작성지시(시·군)
- 보조금 신청(산주)
- 보조금 교부(시·군)

## 115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공공)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기술지원과 입니다.

### 1. 목 적

- 21세기 한국임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다목적 산림경영 단지를 조성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첨단임업 과학기술 개발·보급
  - 산지의 자원화, 임업의 산업화 및 산림의 공익화를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
  - 쾌적하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 창달
- 주변 농산촌지역 여건에 맞게 농림복합 소득원을 연계·개발하여 풍요로운 산림지역경제권 형성

### 2. 추진방향

- 임업경영·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 첨단 임업기술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시험연구림 조성
  - 임업시험연구 수행에 필요한 중추 관리지원시설 설치
- 다양한 산지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 급증하는 산림휴양문화 수요·홍보에 필요한 휴양학습 및 청소년수련 지원시설등 설치
  - 산림의 생산력 및 공익가치 보전·증진에 필요한 경영림 및 자연생태 보전림 구분 배치
- 주변지역의 연계개발 방향은
  - '창촌'을 산촌개발의 시범마을로 정비
  - '봉평'은 주변 관광휴양지구를 지원하는 배후도시로 육성

※ 주요골자 : 시험연구+산림경영+학습휴양+산촌진흥  
(단지내 모든 시설·사업은 '시험연구'와 연계추진)
- 단지조성 방향(기능별로 구분조성)
  - 중추관리기능 : 기본적 시설로서 단지내외의 시설·사업총괄 및 시설운영 효율성 제고

- 시험연구기능 : 산림 및 임업 생산현장에 적용가능한 선진기술의 개발·보급 및 전시·홍보
- 임업생산기능 : 민유림경영의 산 교육장이 되게하며, 특히 WTO체제 이후 농림복합 소득원 제고를 위한 전진기지화
- 산림문화홍보기능 : 산림을 미래 사회(문화)간접자본시설로 부각될 수 있도록 산림공익기능과 관계된 각종 시설설치 및 교육·학습 이벤트사업을 개발·홍보

### 3. 근거법령

- 법적근거 : 산림법 제21조(특수개발지역)
- 대통령지시사항 : 산림의 다목적경영 추진대책 강구  
(코드번호 397 : 03-27-38)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개소 (24,480ha)	-	-	-	-	-	
사업비	계	백만원 116,892	576	1,064	1,375	9,134	104,743
	보 조	116,892	576	1,064	1,375	9,134	104,743
	용 자	-	-	-	-	-	-
	지방비 자부담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단지위치 : 강원 홍천군 내면·서석면, 평창군 봉평면 일원 국유림  
(운두령지구)
- 조성기간 : 1996~2005년(10년간)
- 구역면적 : 24,480ha(기능별로 구획하되 '시험연구'기능이 부수기능을 주도)  
※ 시험연구 1,803ha, 산림경영 12,444, 자연보전 10,233

○ 주요시설

- 관리지원 : 시험연구동(5,280㎡), 일반관리사(561㎡), 기계화센터(1,650㎡)등
- 시험연구 : 임목육종시험, 조림무육시험, 기계화시험, 사방이수시험등
- 교육수련 : 청소년수련원, 산림박물관, 통나무집, 산림육장, 전망탑등
- 연결순환 : 간선임도망(508km)

○ 투자계획 : 1,169억원

○ 사업수행주체 : 산림청→임업연구원, 육종연구소 및 북부지방산림관리청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 산 액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375	1,375	1,375	-	-	-
실시설계 (연구본부동)	1동	93	93	93	-	-	-
간선임도시설	15km	1,275	1,275	1,275	-	-	-
부대비	1식	7	7	7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02-961-2371~5)  
단지조성과 관계된 모든업무의 총괄조정, 강원도등 유관기관  
과 협의 및 예산확보
- 임업연구원, 육종연구소 : 단지내 시험연구사업 계획수립 시행
- 북부지방산림관리청(운두령국유림관리소) : 단지내 산림경영사업계획  
수립·시행, 단지주변 농산촌민 지도·지원, 시설공사등 현장  
지도·점검
- 강원도 : 산촌지역 개발정비, 주변민유림 경영지원, 예산확보
- 필요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조정, 촉진

####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1993. 3~12 : 운두령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서울대학교 임업과학연구소)
- 1995. 4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환경부)
- 1995. 6~12 :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
- 1996. 5 : 동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방법 :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국비(일반회계) 투자

#### <행정사항>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사업 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1호서식】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산림청)



【별지 제1호서식】

##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기관명: \_\_\_\_\_ )

구분 사업· 시설명	사업장의 위치(행 정구역및 임·소반 등 명기)	계 획(A)		실 적(B)		추진성과(B/A)		추진상 특기사항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예) ○육림 ○간벌 ○임도 ○조림 무육시 험 ○시험 용사방 댐축조 . . . . .			백만원		백만원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정과입니다.

## 1. 목 적

사유림 경영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의 자립 운영체계 구축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

## 2. 추진방향

- 지역조합 위주에서 품목별 생산자 중심단체로 육성(전문조합 설립 및 지원)
- 임산물 유통전담기관으로 육성(집하장, 직매장, 종합처리장)
-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개발(신용사업추진, 신규사업개발)
- 정부의 경상적 보조는 점진적으로 줄이되 융자는 확대

## 3. 근거법령

- 임업협동조합법 제7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143조합	141조합	142조합	143조합	143조합	143조합	
사 업 비	계	95,641	21,557	5,862	8,627	8,627	50,968
	보 조	13,116	4,212	976	991	991	5,946
	기금융자	64,750	12,100	3,410	6,155	6,155	36,930
	지방비	8,895	2,712	687	687	687	4,122
	자부담	8,880	2,533	789	794	794	3,970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구 분	사 업 내 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조건	사업시행체계
보 조	상무급여 보조	142개조합 상무	1조합당 2,139,860원	산림청 → 임협중 양회 → 임협조합
"	조합운영비 보조	142개조합	정상(73) 6,000,000원 (국고 50%, 지방비 50%) 보통(51) 12,000,000원 (국고 50%, 지방비 50%) 기초(18) 18,000,000원 (국고 50%, 지방비 50%)	산림청 → 시·도 → 시군 → 임협조합
산림개발 기금용자	임산물유통시설 운영 자금, 조합자체사업, 작업단 운영, 전문조합 설립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 실행사업비 용자	143개조합	6,155,000,000원 연리 3% 2년거치 1년상환	산림청 → 임협중 양회 → 임협조합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역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용자:기금, 보조: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43조합	백만원 8,627	7,146	991	6,155	687	794
○ 조합운영비	142조합	1,374	687	687	-	687	-
○ 상무급여	142조합	1,098	304	304	-	-	794
○ 임협육성	143조합	6,155	6,155	-	6,155	-	-

※ 용자조건 : 연리 3%, 2년거치후 1년상환, 용자는 산림개발기금 용자금임.

117	임업기술보급(공공)
-1	(임업기술지도)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기술지원과입니다.

### 1. 목 적

임업기술의 지도보급 체계를 확립하여 전체산림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림 산주를 대상으로 임업기술지도를 통해 산지의 자원화 및 임업의 산업화 촉진

### 2. 추진방향

- 개발된 임업기술을 산림경영자에게 바로 연결시켜 실용화하도록 기술보급 체계 개선
- 임업기술지도원을 산림경영 주체별로 지정하여 경영 책임지도 및 행정편의 제공
- 임업기술지도원에 대한 교육 강화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조(임업기술지도원 등)
- 산림법시행령 제13조(임업기술지도원의 직무 및 배치)
- 산림법시행령 제14조(임업기술지도원의 자격)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기 관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지도원급여(명)	(787)	(787)	(787)	(787)	(787)	(787)
	산림지발간(천부)	3,588	1,104	276	276	276	1,656
	지원장지원(대)	942	120	30	153	183	456
	- 짚 차	330	120	30	-	30	150
	- P . C	787	-	-	153	153	481
	임업기술편람(부)	4,400	-	-	4,400	-	-
계		119,794	22,525	6,827	7,056	8,258	75,128
사업비	보 조	90,331	17,852	5,412	5,632	6,607	54,828
	음 자						
	지 방 비 자 부 담	29,463	4,673	1,415	1,424	1,651	20,300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사업내용

- 임협내 임업기술지도원 배치에 따른 지도원 급여 지원
- 임업기술 홍보자료 발간비 지원
- 임업기술지도장비(찍차 · P.C) 구입비 지원

(2)지원대상 : 임업기술지도원 배치 및 산림지발간, 지도장비(찍차, P.C)  
배정 - 임협중앙회

##### (3)지원규모 및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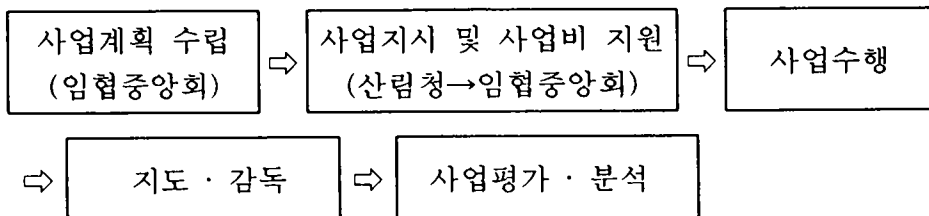
###### ○지원규모

- 임업기술지도원 배치(143개 조합) : 787명
- 임업기술지도 홍보자료 발간
  - 산림지 : 23,000부/월간 (연 276천부)
- 임업기술지도장비(찍차, P.C) 배정
  - 찍 차 : 1대/조합당
  - P . C : 1대/지도원 1인당

###### ○지원조건

- 지도원 급여 : 국고 80%, 자력 20%
- 산림지 : 국고 70%, 자력 30%
- 임업기술지도장비(찍차, P.C) : 국고 70%, 자력 30%

###### ○사업시행체계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금액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7,056	5,632	5,632	-	-	1,424
입업기술편람발간	4,400부	93	93	93	-	-	-
지도원급여 보조	787명	6,644	5,316	5,316	-	-	1,328
장비지원(P.C)	153대	153	107	107	-	-	46
산림지발간	23천부/월	166	116	116	-	-	5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02-961-237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02-416-9419~20)
- 시·도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도지회
- 시·군 자치구 : 임업협동조합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임업기술지도원의 연간지도 활동계획 수립
- 사업비 지원방법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 산림청장 : 보조금 교부결정(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보조사업실적보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 산림청장 : 보조금의 금액확정(보조금의예산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고
	부 터	까 지		
짚차	취득일	6년		조달청 고시 제6호 물품 내용연수 적용
P . C	"	5년		

나. 보고 · 기타

보조사업 완료후 사업실적 보고(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림청)

117	임업기술보급 (공공)
-2	(임업기술개발지원)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기술지원과입니다.

### 1. 목 적

- 지구환경보전과 국산재 자급도 제고 및 농산촌소득 향상
- 생물공학을 응용한 신제품개발 및 기능성 신물질 개발
- 산지자원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임업생산 현장애로타개 기술개발

### 2. 추진방향

- 산지자원화 10년계획과 연계한 정책 및 기술개발
- 임업의 산업화·실용화 기술개발
-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자원의 발굴·이용 기술개발

### 3. 근거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0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농림수산특정 연구사업의 실시)

### 4. 연도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0
사업량(제목)		1,572	704	89	100	97	582
-일반연구		1,519	682	83	96	94	564
임업시험연구		997	459	55	63	60	360
임목육종연구		522	223	28	33	34	204
-특정연구		53	22	6	4	3	18
사 업 비	계	189,821	54,321	11,958	14,376	15,995	93,171
	보 조	189,821	54,321	11,958	14,376	15,995	93,171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사업내용

##### (1)연구사업내용

###### ○ 일반연구

###### -임업시험연구

- 산림환경보전과 공익기능우지 증진 기술개발
- 임업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 임산자원의 고도이용 및 단기임산 소득원 개발
- 산지이용의 합리화 및 임업경제구조·제도개선

###### -임목육종연구

- 주요향토 경제수종 및 유실수의 신품종 육성
- 우량신품종 대량증식 기술개발
- 생물공학을 응용한 신물질 개발

###### ○ 특정연구

###### -임산자원의 발굴·이용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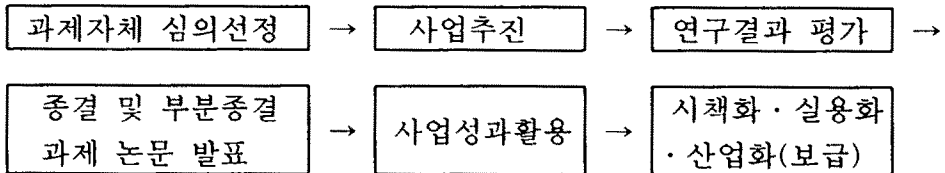
###### -농산촌의 소득과 연계된 산촌개발사업 연구등

(2)지원대상 : 산·학·연·관·민으로 구성된 협동연구팀 및 소속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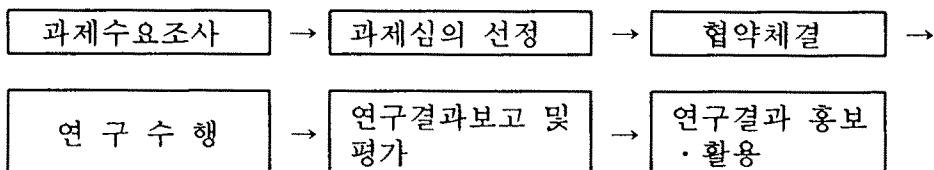
(3)지원규모 및 조건:전액 국고지원

##### (4)사업시행체계

###### ○ 일반연구(임업연구원, 임목육종연구소)



###### ○ 특정연구(산림청)



(5)사업신청

○ 신청자격

- 일반연구 : 소속연구기관(자체사업)
- 특정연구 : 산·학·관·연·민으로 구성된 협동연구팀 및 연구기관

○ 신청절차

- 일반연구 : 소속연구기관 자체 연구과제선정 추진
- 특정연구 : 연구기관·출연기관 단체등에서 사업계획서작성 제출

○ 구비서류

- 특정연구 : 임업기술개발계획서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 업 량	사 업 비(일반회계)			
		사업비 (합계)	보 조	지방비	자부담
계	100제목	백만원 14,376	14,376	-	-
-일반연구	96	14,126	14,126	-	-
·임업시협	63	8,418	8,418	-	-
·임목육종	33	5,708	5,708	-	-
-특정연구	4	250	250	-	-

<추진체계>

가.사업주관기관 : 산림청(임업연구원,임목육종연구소)

나.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기술지원과 (02-961-2374~5)
- 임업연구원 : 기획과 (02-961-2522~3)
- 임목육종연구소 : 육종과 기획실(0331-290-1142~3)

다.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일반연구 : 임업의 산업화, 산지이용의 합리화등 산림시책 추진과의 연계성
- 특정연구 : 현장적용성, 상업화 가능성등

○ 선정절차

-일반연구 : 임업연구기관 자체심의 선정

-특정연구 : 공모과제를 대상으로 임업기술개발심의회에서 심의선정

라.사업시행

○ 일반연구 : 자체 선정된 과제설계서를 작성하여 임업연구기관에서 시행

○ 특정연구 : 임업기술개발심의회에서 선정된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체결 후 사업시행

<행정사항>

가.사후관리

○ 연구성과보고서 유인 학계, 단체, 임협, 임업후계자, 독립가 등 배부 및  
연구내용 전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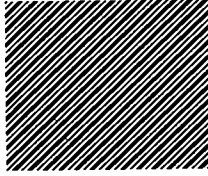
나.보고

○ 일반연구 : 연구기관 자체중간평가 및 연차평가후 연차보고

○ 특정연구 : 주관연구기관 연구결과를 임업기술개발심의회 평가후 보고

# 여 백

## Ⅱ. 생 산 및 유 통 개 선



# 여 백

118	임 목 생 산 (자 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입니다.

### 1. 목 적

산업용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벌채를 하고자 하는 영세산주에게 생산비를 지원, 산주소득증대 및 국내 임산업의 활성화

### 2. 추진방향

- 피해목 및 수종갱신 벌채임지 우선지원
- 대면적 개벌을 지양하고 소구역 벌채
- 산림자원 증축을 위한 절벌정책 유지

### 3. 근거법령 : 산림법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 2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m')		434,686	150,886	36,800	37,000	30,000	180,000
사 업	계	17,415	5,613	1,700	1,702	1,200	7,200
	보 조	-	-	-	-	-	-
	용 자	17,415	5,613	1,700	1,702	1,200	7,200
비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 사업내용

익년도에 벌채를 하고자 하는 산주에게 벌채사업 자금을 신청받아 산림개발기금에서 융자지원

##### ○ 지원대상자

독립가, 임업후계자, 영세산주 및 산림경영자

##### ○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 산림개발기금
- 지원 단가 : m'당 46,000원
- 지원한도액 : 1인당 50,000천원 이내
- 융자 조 건 : 연리 3%(2년거치 1년상환)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m')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산림개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37,000	백만원 1,702	1,702	-	1,702	-	-
임목생산	37,000	1,702	1,702	-	1,702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산림청

#### 나. 사업담당 부서

- 산 릫 청 :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 - 961 - 2415,6)
- 시 · 도 : 산림과(녹지과), 임업협동조합 도지회
- 시·군·구 : 산림과(녹지과), 임업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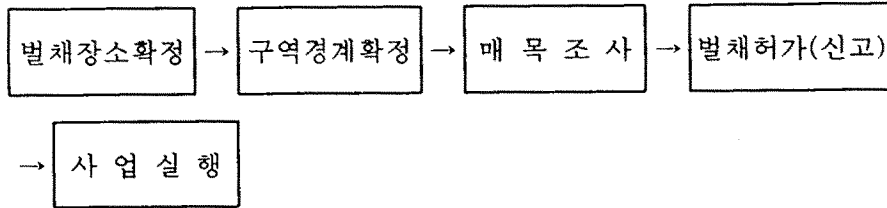


다. 자금지원 예정자

- '97임목생산사업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된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변경의 경우도 같음

- 사업비 지원방법

읍자사업을 원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는 읍자금 신청을 시·군 임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읍자 적격자를 확정후 읍자금 대출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별채임지는 시·군에서 「사유림입목별채실시요령」에 따라 수시로 별채지도 및 점점을 통하여 적정한 별채가 이루어 지도록 함.

나. 보 고

- 입목별채허가(신고)상황 보고(분기보)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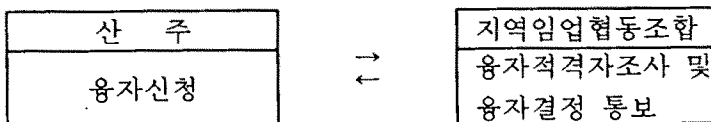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별채허가 : 시·군 산림과
- 읍자금 대출신청 : 시·군 임업협동조합

나. 신청자격

- 별채를 하고자 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산림개발기금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자율사업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① 병해충피해임지로서 별채가 시급한 임지
  - ② 영림계획 임지로서 주요 ‘산’ 별 단지내 임지
  - ③ 영림계획임지로서 임업진흥촉진지역 임지
  - ④ 기타 영림계획 임지등
- 우선순위
  - ① 독립가
  - ② 임업후계자
  - ③ 영세산주
  - ④ 소재산주
  - ⑤ 산림경영자 등
- 선정절차
  - 관할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융자신청하면 현지 확인후 융자적격자 조사에 의하여 융자결정

【 별지 제1호서식 】

### 산림개발기금융자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담	보조	

199 . . . . .

○ 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화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가. 소유권확인서 1부

나.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 ○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119 -1	임산소득증대(자율) (표고생산기반조성)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 1. 목 적

- 표고재배시설의 현대화·단지화로 표고재배의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 제고

### 2. 추진방향

- 노지재배방식에서 시설재배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표고버섯의 연중생산체계 확립
- 표고자목 공급의 원활화를 기하는 등 표고생산 기반조성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30조,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	-	-	-	-	-	
사 업 비	계	289,372	32,064	18,476	29,854	29,854	179,124
	보 조	37,509	1,373	2,752	4,173	4,173	25,038
	융 자	115,033	19,242	6,511	11,160	11,160	66,960
	지방비	36,136	-	2,752	4,173	4,173	25,038
	자부담	100,694	11,449	6,461	10,348	10,348	62,088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97 사업비(예산)내용 참조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표고재배시설

-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이하 “임업협동조합” 포함)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60% 보조(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국고보조한도액 : 30백만원 이내(생산자 협동조직의 경우 300백만원 이내)
- 국고보조단가
  - 시설비 : m<sup>2</sup>당 6,600원(기준단가 22,000원의 30%)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시설계획등)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 기계·장비구입비 :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하되 사업주관기관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비닐하우스(스프링클러등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조등 관련시설 포함)설치, 기타 관련재배시설

#### (2) 표고원목재배

- 지원대상자 : 표고원목재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융자(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리 5%
  - 지원기간 : 5년(3년거치 후 2년상환)
- 융자한도액 및 융자단가
  - 융자한도액 : 1억원이내
  - 융자단가 : m<sup>2</sup>당 112천원
- 사업내용 : 표고자목 및 종균구입, 차광망시설 재료구입(차광망·철사등)등

#### (3) 표고톱밥균상재배

- 지원대상자 : 표고톱밥균상재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융자(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리 5%
  - 지원기간 : 5년(3년거치 후 2년상환)

- 용자한도액 및 용자단가
  - 용자한도액 : 3억원이내
  - 용자단가 : 1개소당 3억원 이내로 하며,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시설계획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표고 균상재배시설설치, 재배재료구입등

(4) 표고재배단지조성

- 지원대상자 : 표고생산자 협동조직
- 지원비율
  - 표고재배시설 : 총 사업비의 60%보조(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표고원목재배 : 총 사업비의 70%용자(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표고툽밥균상재배 : 총 사업비의 70%용자(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용자)
  - 용자금리 : 연리 5%
  - 지원기간 : 5년(3년거치 후 2년상환)
- 1개단지 지원기준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백만원)				
				계	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1,000	180	280	180	360
○ 표고재배시설	m'	27,300	22	600	180	-	180	240
○ 표고원목재배	m'	625	160	100	-	70	-	30
○ 표고툽밥균상재배	개소	1	300,000	300	-	210	-	90

※ 세부사업별 단가는 상기 기준단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 생산자 협동조직의 사업계획(시설계획등)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서 단가·지원대상 세부사업 등을 증감·조정할 수 있음(표고재배시설의 국고보조 한도액 : 180백만원 이내)

(5) 건조기·버섯자동접종기

- 지원대상자 : 표고재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용자(국고용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용자금리 : 연리 5%
  - 지원기간 : 5년(3년거치 후 2년상환)

- 읍자한도액 및 읍자단가
  - 읍자한도액 [ 건조기 : 1천만원 이내  
                  버섯자동접종기 : 5천만원이내
  - 읍자단가 [ 건조기 : 1대당 2,100천원  
                  버섯자동접종기 : 1대당 10,500천원
- 사업내용 : 열풍건조기·버섯자동접종기 구입

(6) 송이환경개선

- 지원대상자 : 송이생산자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읍자(국고읍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읍자금리 : 연리 5%
  - 지원기간 : 5년(3년거치 후 2년상환)
- 읍자한도액 및 읍자단가
  - 읍자한도액 : 1억원이내
  - 읍자단가 : ha당 1,735천원
- 사업내용 : 송이생산지 식생정리, 낙엽·부식층 제거, 관수시설등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읍자		
계		백만원 29,854	15,333	4,173	11,160	4,173	10,348
○ 표고재배시설	496천 m <sup>2</sup>	10,910	3,273	3,273	-	3,273	4,364
○ 표고원목재배	65천 m <sup>2</sup>	10,400	7,280	-	7,280	-	3,120
○ 표고툽밥균상재배	10개소	2,492	1,744	-	1,744	-	748
○ 표고재배단지조성	5단지	5,000	2,300	900	1,400	900	1,800
- 표고재배시설	136,500m <sup>2</sup>	3,000	900	900	-	900	1,200
- 표고원목재배	3,125m <sup>2</sup>	500	350	-	350	-	150
- 표고툽밥균상재배	5개소	1,500	1,050	-	1,050	-	450
○ 건조기·버섯자동접종기	41대	363	254	-	254	-	109
○ 송이환경개선	80ha	689	482	-	482	-	207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이하 “자치구”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5)
- 시·도 : 산림과(녹지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1) 선정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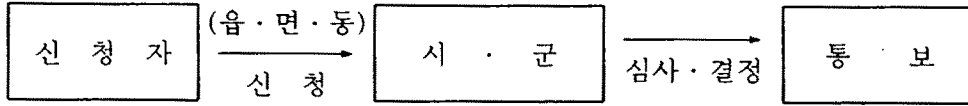
- 표고재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 표고재배단지조성사업은 사업부지가 확보된 표고생산자 협동조직에 한함
- 송이버섯 생산자(송이환경개선 사업에 한함)

(2) 우선순위

- 표고재배시설·표고원목재배·표고톱밥균상재배, 건조기·버섯자동접종기
  - ①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이상이고 표고자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② " " 표고자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③ 주산단지내에서 표고재배경험이 5년미만이고 표고자목 3만본이상을 재배하는 자
  - ④ " " 표고자목 3만본미만을 재배하는 자
  - ⑤ 기타 표고재배자(주산단지 이외지역의 표고재배자에 대한 우선순위도 상기 ①~④순위 적용)
- 송이환경개선
  - ① 주산단지내에서 송이를 5년이상 생산한 자
  - ② " " 5년미만 생산한 자
  - ③ 기타지역에서 송이를 5년이상 생산한 자
  - ④ " " 5년미만 생산한 자
- 표고재배단지 조성
  - ① 표고 주산단지내 표고생산자 협동조직
  - ② 기타 표고생산량이 많은 시·군의 표고생산자 협동조직



(3) 선정절차



(4) 생산자 협동조직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요건(임업협동조합은 제외)

- 생산자 협동조직(법인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법인일 것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이 생산요소인 현물(토지, 시설등)로 되어 있는 법인일 것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일 것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협동조직을 선정하기 전에 협동조직 조합원의 자격 유무 등을 확인
- 지원후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확인
  - 지원내용이 “시설물 설치”인 경우 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었는지 여부 및 토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앞으로 사업실적을 보고한 법인에게만 지원토록 할 계획임)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대출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임 협 : 대출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표고채배시설	'97년도	2001년도	4년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적용

###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대출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또는 읍·면·동)

나. 신청자격 : 표고·송이 생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다. 신청절차 :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31일  
까지 시·군(또는 읍·면·동)에 제출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5항<추진체계> “자금지원예정자” 내용과 같음.

119	임산소득증대(자율)
-2	(조경수·분재소재생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자원조성과입니다.

### 1. 목적

- 조경수 및 분재소재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량한 조경수 및 분재소재를 생산함은 물론 농외소득 증대에도 기여

### 2. 추진방향

-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자중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융자지원
- 대단위 분재생산 단지조성을 위한 분재생산자 단체 융자지원
- 농어촌발전계획 및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지역 우선 지원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의2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ha)	계	2,532 (8개소)	477	195	250 (1개소)	230 (1개소)	1,380 (6개소)	
	조경수	1,725	290	135	180	160	960	
	분재	807 (8개소)	187	60	70 (1개소)	70 (1개소)	420 (6개소)	
사업비	계	195,489	31,231	14,263	20,033	18,566	111,396	
	조경수	124,494	19,300	9,863	13,200	11,733	70,398	
	분재	70,995	11,931	4,400	6,833	6,833	40,998	
	융자	계	136,841	21,862	9,984	14,023	12,996	77,976
		조경수	87,145	13,510	6,904	9,240	8,213	49,278
	분재	49,696	8,352	3,080	4,783	4,783	28,698	
	자부담	계	58,648	9,369	4,279	6,010	5,570	33,420
조경수		37,349	5,790	2,959	3,960	3,520	21,120	
분재	21,299	3,579	1,320	2,050	2,050	12,300		

※ 대단위분재생산 단지조성 : '97년(제주도), 년차별 1개도씩 조성추진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배경

UR대체 작목으로 육성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수급정책에도 원활을 기여

(2) 지원대상자

- 조경수 및 분재소재 생산업 종사자
- 대단위 분재생산단지조성을 위한 분재생산자 단체

(3) 지원단가 : 73,330천원/ha

단, 대단위 분재생산단지조성은 개소당 1,190백만원

(4) 지원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5) 지원조건

- 조 경 수 생산 : 연리 5% (3년거치, 5년상환)
- 분재소재생산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대단위분재생산단지조성 : 연리 5%(3년거치,7년상환)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50 (1개소)	20,033	14,023	-	14,023	-	6,010
-조 경 수	180	13,200	9,240	-	9,240	-	3,960
-분재소재		6,833	4,783	-	4,783	-	2,050
· 소재생산	70	5,133	3,593	-	3,593	-	1,540
· 단지조성	(1개소)	1,700	1,190	-	1,190	-	510

\* 대단위 분재생산 단지조성 : 1개소(제주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도

- o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o 시·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o 임업협동조합 : 현지 심사후 자금집행

나. 사업담당 부서

- o 산림청 :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02-961-2353~4)
- o 시·도 : 도시계획(환경녹지,농정,산업경제)국·녹지(산림)과
- o 시·군자치구 : 산림과(녹지과)

## 다. 대상자 선정

### ○ 신청자격

- 한국조경수협회 회원과 한국분재조합 조합원은 협회장 및 조합장의 추천서(생산확인)를 받은자
- 비회원 및 비조합원은 임업협동조합장의 추천서(생산확인)를 받은자
- 분재생산자단체는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은단체

### ○ 선정기준

- 확보유자금의 70%는 한국조경수협회 회원 및 한국분재조합원에게 지원
- 확보유자금의 30%는 비회원 및 비조합원에게 지원
- 다만, 대단위 분재생산단지조성유자금은 분재생산자로 구성된 단체에 지원

### ○ 우선순위

- 조경수 생산포지 1ha이상을 가지고 3년이상 조경수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자
- 분재소재 생산시설 330m<sup>2</sup>이상을 가지고 3년이상 분재소재 생산·판매한 경험이 있는자
- 용자에 따른 담보능력이 있는자
- 동 사업에 대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자

### ○ 선정절차

신청 → 심사결정 → 심의 및 예산요구 →사업심의 예산확보 시·도배정  
(추천서를 (시·군농어촌 (시·도농어촌 (산림청)  
받은자) 발전심의회) 발전심의회)

- 다만, 대단위 분재생산단지조성 유자금은 시·도지사에게 단체명으로 신청하고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및 예산요구함.

## 라. 사업시행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조경수(분재소재)생산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해당 시군산림과·녹지과에 접수하여야 함.

○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조경수 생산 : 1인당 100백만원이내
]	분재소재생산 : 1인당 50백만원이내
- 지원비율 : 용자 7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조 경 수 : 금리 연 5% (3년거치 5년상환)
]	분재소재 : 금리 연 5% (3년거치 7년상환)

  - 대단위분재생산단지조성 : 금리 연 5%(3년거치,7년상환)

- 사업시행체계

· 집행기관 : 산림청 → 시·도 → 시·군

	신청	제출	종합	
· 절차	사업자 ↔ 시·군	↔ 시·도	↔ 산림청	
	결정	가내시	가내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에서 책임,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장 관할 시·군·구(녹지과, 산림과)

나. 신청서 제출기한 : '97. 1. 31까지

다. 구비서류 : 조경수(분재소재) 생산 자금용자신청서1부 【별지제1호 서식】

라. 대상자 선정 : 5항<추진체계> “ 대상자 선정” 내용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 조경수(분재소재)생산자금 용자신청서

신청서	주소			전화 번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 사업명					
생산자금 (천원)	내역				
	계	용자	생산자 부담	기타	
세부사업계획		별첨			
생산기반시설	내역				
	포지면적		시설규모(온실 등)		장비보유사항
	m'		동, m'		대
영농경력	년 월 ~ 년 월		까지 (년 월)		
최종학력	년 월		학교 (졸업, 중퇴, 수료)		
영농교육 이수사항	기간		교육분야		실시기관명
	년 월 일	~	년 월 일		

- 첨부 1. 세부사업계획서  
 2. 조경수(분재소재) 생산 사실확인 추천서  
 3. 농림수산정책자금 용자신청 자료

위와 같이     년도 조경수(분재소재) 생산자금 용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 세 부 사 업 계 획 서

생산수종별	소 재 지			지목	사용면적 (m <sup>2</sup> )	수량 (본)	사업비 (천원)	비고
	읍 면	리	지번					



[첨부 2]

## 조경수(분재소재)생산 사실 확인추천서

생산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포지(생산시설)소재지				생 산 상 황				
시·군·읍·면	리·동	지번	지목	수종	수고 (cm)	수량 (본)	수령 (년)	실제면적 (㎡)
용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지원				제출처 :		시·군		

위 생산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한국조경수협회장      인  
(협회원)

한국분재조합장      인  
(조합원)

○○ 군 임업협동조합장      인  
(비회원 및 비조합원)

※ 해당 단체장의 직인을 받아야 유효함

119 -3	임산소득증대(자율) (단기소득임산물생산)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 입니다.

### 1. 목 적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및 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지원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통한 생산농가 소득증대 도모

### 2. 추진방향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30조,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	-	-	-	-	-
사 업 비	계	16,144	1,463	1,017	1,708	1,708	10,248
	용 자	11,176	1,024	712	1,180	1,180	7,080
	자부담	4,968	439	305	528	528	3,168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97 사업비(예산)내용” 참조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산나물·산약초

○ 지원대상자 : 산나물·산약초 생산자 또는 생산자협동조직(이하 “입업협동조합”포함)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융자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리 5%
  - 지원기간 : 5년(3년거치 후 2년상환)
- 융자한도액 및 융자단가
  - 융자한도액 : 1억원 이내
  - 융자단가 : m<sup>2</sup>당 1,900원
- 사업내용 : 산나물·산약초 종자구입, 재배재료구입등

## (2) 산과실

- 지원대상자 : 산과실 생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융자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리 5%
  - 지원기간 : 5년(3년거치 후 2년상환)
- 융자한도액 및 융자단가
  - 융자한도액 : 1천만원 이내
  - 융자단가 : 본당 1,100원
- 사업내용 : 산과실 묘목구입, 비료구입등

## (3) 야생화 재배

- 지원대상자 : 야생화재배 생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융자 (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리 5%
  - 지원기간 : 5년(3년거치 후 2년상환)
- 융자한도액 및 융자단가
  - 융자한도액 : 1억원 이내
  - 융자단가 : ha당 51,215천원
- 사업내용 : 야생화재배(시설포함)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역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백만원 1,708	1,180	-	1,180	-	528
o 산나물·산약초	234천m'	632	442	-	442	-	190
o 산과실	10천본	16	11	-	11	-	5
o 야생화재배	14.2ha	1,060	727	-	727	-	33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이하 “자치구” 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o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5), 산림환경과(02-961-2382)
- o 시·도 : 산림과(녹지과)
- o 시·군 : 산림과(녹지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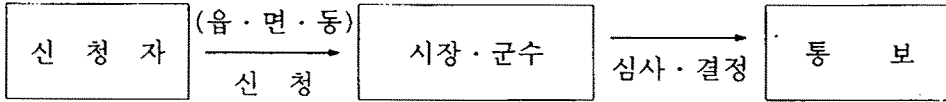
(1) 선정대상자

- o 산나물·산약초·산과실·야생화재배 생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 ※ 야생화의 경우 한국자생식물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2) 우선순위

- ① 품목별 주산단지내에서 사업희망 품목을 5년이상 생산한 자
- ② " " " 5년미만 생산한 자
- ③ 기타지역에서 사업희망 품목을 5년이상 생산한 자
- ④ " " " 5년미만 생산한 자
- ※ 야생화의 경우 선정대상자중 재배면적 및 경력을 고려하여 선정

(3) 선정절차



(4) 생산자 협동조직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요건(임업협동조합은 제외)

- 생산자 협동조직(법인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법인일 것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이 생산요소인 현물(토지, 시설등)로 되어 있는 법인일 것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일 것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협동조직을 선정하기 전에 협동조직 조합원의 자격유무등을 확인
- 지원후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확인
  - 지원내용이 “시설물 설치”인 경우 시설물이 법인명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 및 토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앞으로 사업실적을 보고한 법인에게만 지원토록 할 계획임)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지원대상자는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융자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임 협 : 융자금 사후관리

### 나. 보 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또는 읍·면·동)

나. 신청자격 : 산나물·산약초·산과실·야생화재배 생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야생화의 경우 한국자생식물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다. 신청절차 :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시·군(또는 읍·면·동)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5항<추진체계> “자금지원예정자” 내용과 같음

바. 지원대상 산나물, 산약초, 산과실

구 분	종 류
산 나 물	고사리, 취나물, 더덕, 도라지, 참나물, 두릅, 원추리, 죽순, 기타 산나물
산 약 초	삼지구엽초, 창출, 백출, 애엽, 시호,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작약, 천마, 기타 산약초
산 과 실	개암, 머루, 다래, 으름, 기타 산과실

120	임산물가공지원(자율)
-1	(임산물가공이용원자재 구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 입니다.

## 1. 목 적

국내임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으로 국산원자재 수요확대를 통한 산림소유자의 소득제고 및 국산재 사용기반 조성

## 2. 추진방향

-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원자재로 구입코자 하는 자에게 융자지원하여 국산 원자재 이용촉진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5조,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천 m'	208	75	75	145	870
사	계	118,951	22,081	6,225	6,225	12,060
업	융 자	83,267	15,457	4,358	4,358	8,442
비	자부담	35,684	6,624	1,867	1,867	21,708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지원대상자 : 임산물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이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포함)

####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융자(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한도액 : 3억원이내
- 융자금리 : 연리 5.5%
- 융자기간 : 5년(3년거치 후 2년상환)

(3) 사업내용

- 국내산 임산물의 부가가치제고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가공업자가 국내산 임산물을 가공원자재로 구입하는 자금지원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임산물가공이용원자재 구입	75천m'	백만원 6,225	4,358	-	4,358	-	1,867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이하 “자치구”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4)
- 시·도 : 산림과(녹지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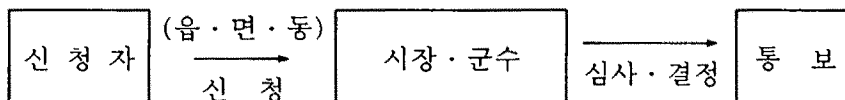
(1) 선정대상자

- 임산물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가공용 국내산 임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2) 우선순위

- ① 국내산 목재를 구입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자
- ② 국내산 단기소득임산물을 구입하여 가공하고자 하는 자

(3)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및 변경계획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는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융자 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원자재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임 협 : 융자금 사후관리

나. 보 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대출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또는 읍·면·동)

나. 신청자격

- 임산물 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가공용 국내산 임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시·군(또는 읍·면·동)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공장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 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5항<추진체계> “자금지원대상자” 내용과 같음

120 -2	임산물가공지원(자율) (임산물가공이용시설)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 1. 목 적

- 시설이 노후된 가공·이용시설의 교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
- 간벌소경재 등의 가공·이용시설 확대로 임산물의 이용도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 2. 추진방향

- 노후된 가공·이용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대체하여 생산성 향상
-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의 신·증설로 임산물 이용도 제고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5조,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개소 857	174	56	53	82	492
사 업 비	계	196,438	32,627	13,516	18,700	18,885	112,710
	읍 자	137,923	22,839	9,461	13,090	13,219	79,314
	자부담	58,515	9,788	4,055	5,610	5,666	33,396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지원대상자

- 임산물 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증을 필한 자(이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포함)로서 노후시설을 교체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
- 가공공장 신설을 위하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국고 70%, 자부담 30%)
- 융자한도액 : 개소당 설계금액의 70% 이내
- 융자금리 : 연리 5% : 산주, 농특회계 대출사업 집행지침상 별도요건을 구비한 법인, 공익법인  
연리 8% : 비산주로서 연리 5%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후 7년상환)

(3) 사업내용

- 노후된 가공·이용시설을 현대화시설로 교체
-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의 신·증설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53개소	백만원 18,700	13,090	-	13,090	-	5,610
○ 칩가공시설	4	996	697	-	697	-	299
○ 통나무가공시설	5	1,913	1,339	-	1,339	-	574
○ 제재시설	25	5,555	3,889	-	3,889	-	1,666
○ 목각생산등	15	4,890	3,423	-	3,423	-	1,467
○ 밤 가공시설	1	96	67	-	67	-	29
○ 목재가공이용 복합시설	1	750	525	-	525	-	225
○ 유기질비료 생산시설	1	1,500	1,050	-	1,050	-	450
○ 간벌목 집성재가공시설	1	3,000	2,100	-	2,100	-	9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이하 “자치구”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4)
- 시·도 : 산림과(녹지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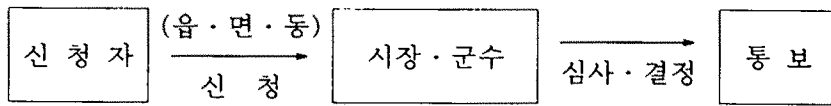
(1) 선정대상자

- 노후화된 임산물가공·이용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가공·이용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

(2) 우선순위

- 노후화된 임산물가공·이용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거나 증설하고자 하는 자
- 임산물가공·이용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

(3)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및 변경계획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는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용자 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임 협 : 융자금 사후관리

나. 보 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또는 읍·면·동)

나. 신청자격

- 임산물가공·이용과 관련한 공장등록을 필한 자로서 노후시설을 교체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을 신설하고자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시·군(또는 읍·면·동)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대출 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5항<추진체계> “자금지원예정자” 내용과 같음.

120	임산물가공지원(자율)
-3	(산지가공공장 설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 입니다.

### 1. 목 적

- 다양한 가공제품 생산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의한 수익성 제고

### 2. 추진방향

- 주요 “산”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 임업진흥촉진지역 소재 시·군 및 주산단지소재 시·군에 임산물가공시설을 설치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5조,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개소 1725	-	1	2	2	12	
사 업 비	계	31,320	-	2,000	1,320	4,000	24,000
	용 자	21,924	-	1,400	924	2,800	16,800
	자부담	9,396	-	600	396	1,200	7,200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지원대상자

- 전국 주요 “산”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 및 임업진흥촉진지역 소재 시·군에 간벌재등 목재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산단지 소재 시·군에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이하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포함)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국가 70%, 자부담 30%)
- 융자한도액 : 개소당 설계금액의 70% 이내
- 융자금리 : 연리 5%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후 7년상환)

(3) 사업내용

- 주요 “산”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 또는 임업진흥촉진지역 소재 시·군에 간벌채등 목재의 가공시설 설치
- 주산단지 소재 시·군에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 설치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산지가공시설	2개소	백만원 1,320	924	-	924	-	39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이하 “자치구”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4)
- 시·도 : 산림과(녹지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다. 자금지원 예정자

(1) 선정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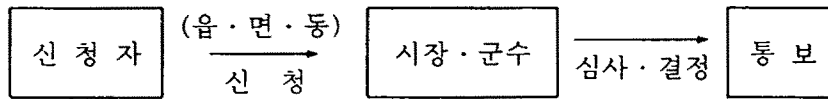
- 주요 “산”별 시범사업단지 【별표 1】 소재 시·군 또는 임업진흥촉진지역 소재 시·군에 목재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주산단지 【별표 2】 소재 시·군에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우선순위

- ① 간벌채등 목재의 가공·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②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으로서 가공·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③ 기타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3)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및 변경계획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게 통보
- 지원대상자는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융자 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원자재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임 협 : 융자금 사후관리

나. 보 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또는 읍·면·동)

나. 신청자격

- 주요 “산”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 또는 임업진흥촉진지역 소재 시·군에 간벌재등 목재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주산단지 소재 시·군에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를 필하였거나 필하고자 하는 자

다. 신청절차

-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시·군(또는 읍·면·동)에 신청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 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5항<추진체계> “자금지원 예정자” 내용과 같음.

**【별 표1】**

**주요 “산”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 내역**

주요 “산”별 시범사업단지	
“산”명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
계 27	
화산 산 용문 산 유명 산 대성 산 매봉 산 공작 산 운두 산 한석 산 구룡 산 대관 산 육백 산 가리왕 산 천등 산 미주지 산 민덕 산 광주 산 성장 산 운수 산 성유 산 덕문 산 모후 산 청옥 산 백병 산 검마 산 지리 산	춘천 양평 가평 철원 인제 홍천 홍천 인양 양주 명천 삼척 평창 충주 청영 동주 공주 보령 진안 진안 무주 순창 장성 화성 봉화 울진 영양

【별 표2】

단기소득임산물 주산단지 소재 시·군 내역

품 목 명	단지수	주산단지 소재 시·군
8	38	
밤	6	부여, 하동, 산청, 광양, 공주, 순창
호 도	1	영동
잣	1	가평
대 추	5	양평, 경산, 밀양, 영월, 청도
표 고	9	영동, 공주, 진안, 장흥1, 원주, 상주, 거제, 장흥2, 청원
송 이	9	영양, 울진, 봉화, 영덕, 삼척, 고성, 문경, 안동, 인제
산 채	6	평창, 무주, 홍천, 가평, 울릉, 진안
고 사 리	1	남해

120 -4	임산물가공지원(자율) (팽이용가공시설)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과 입니다.

### 1. 목적

- 팽 가공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출하량 조절·가격안정을 도모하고 향토 식품개발로 수출 및 사육자 소득증대 기여

### 2. 추진방향

- 전국을 4권역(동,서,남,북부)으로 나눠 각5개소씩 총 20개소의 팽가공공장 설치

### 3. 근거법령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산림법 제55조 제1항

### 4. 연도별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20	6	2	2	2	8
-팽이용가공시설	20	6	2	2	2	8
사업비	계	4,706	3,346	180	180	800
	-음자	3,294	2,342	126	126	800
	-자부담	1,412	1,004	54	54	240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자

- 팽 사육자중 팽이용가공시설을 신·증설코자 하는자
- 팽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제조코자 하는자

##### (2) 지원조건

- 음자한도액 : 1개소당 설치금액의 70%이내
- 음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상환)
- 금리 : 년5%

(3) 사업내용

- 펄 이용 가공공장 및 저장시설의 설치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역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자		
계		180	126	-	126	-	54
펄이용가공시설	2개소	180	126	-	126	-	54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후 7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

-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시·군 : 사업대상자선정, 집행 및 사후관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환경과(02-961-2384~5)
- 시·도 : 산림과, 산림관리과, 산림환경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공원녹지과, 산림환경과
- 융자 : 임업협동조합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신청자는 월별추진 및 가공용 펄의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
  - 시·군·구는 시·도를 경유하여 예산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산림청에 제출
  - 총사업비의 축소가 없고 전체 작업공정의 50%이내 진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 가능
- 사업비 지원방법
  -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라. 기타사항

- 사업추진에 따라 자금융자
-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목적외에 지원자금을 사용 할 경우 즉시 회수후 산림청에 보고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임협 : 읍자금 사후관리

### 나. 보고·기타

- 시·군 : 년 1회이상 점검·확인, 시·도에 보고
- 시·도 : 년1회 점검결과와 시·군 평가를 종합하여 10월 15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산림과(녹지과, 공원녹지과, 산림공원과)

### 나. 신청자격

- 평사육자중 평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신·증설하고자 하는 자
- 평을 이용한 제조시설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

### 다. 신청절차

- 신청자가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 전년도 1월31일까지 신청



### 라.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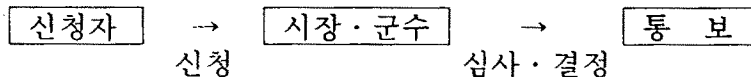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 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 마. 대상자선정

- 선정기준
  - 총사업비의 30%이상을 자부담으로 투자 가능한 자
  - 국내산 평을 이용한 가공시설을 신·증설 또는 가공식품을 제조코자 하는 자

- 우선순위
  - 평사육 경험이 많은자
  - 새로운 평가공식품을 개발 제조코자 하는 자
  - 평가공시설을 신·증설코자 하는 자

### ○선정절차



### 바. 기타사항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매년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하고, 시·군은 시·도를 경유하여 동년 3월말까지 산림청에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제출

120 -5	임산물가공지원(자율) (임산물저장시설)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 입니다.

### 1. 목 적

- 밤·대추·표고·송이등 임산물 저장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출하시기조절 및 상품가치 보전

### 2. 추진방향

- 상온저장에서 저온·냉동저장 방법으로 저장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저온 저장시설 확충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30조,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사업비	계	48,053	9,609	7,244	3,900	3,900	23,400
	보조	8,477	1,072	1,165	780	780	4,680
	융자	15,936	4,224	2,352	1,170	1,170	7,020
	지방비	7,405	-	1,165	780	780	4,680
	자부담	16,235	4,313	2,562	1,170	1,170	7,020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 '97 사업비(예산)내용” 참조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임산물저장시설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40% 보조, 30% 융자(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융자 30%, 자부담 30%)
  - 지원조건(융자)
    - 융자금리 : 연리 5%
    - 지원기간 : 10년(3년거치 후 7년상환)
  - 국고보조한도액 : 60백만원 이내(생산자조직의 경우 300백만원 이내)
  - 국고보조단가
    - 시 설 비 : m<sup>2</sup>당 141,200원(706,000원의 20%)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대상자의 사업계획(시설계획등)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 기계·장비 구입비 :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하되 사업주관기관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밥·대추·표고·산채등 단기소득임산물의 저온저장고(단열공사, 기계시설등 관련시설 포함), 냉동·냉장차량등 관련 기계·장비
- (2) 송이냉동저장시설
- 지원대상자 : 송이 냉동저장법 특허취득자와 기술이전계약된 입업협동조합 또는 특허취득자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40% 보조, 30% 융자(국고보조 20%, 지방비 20%, 국고융자 30%, 자부담 30%)
  - 지원조건(융자)
    - 융자금리 : 연리 5%
    - 지원기간 : 10년(3년거치 후 7년상환)
  - 국고보조 한도액 : 180백만원 이내
  - 국고보조단가 : 1개소당 180백만원(총사업비 900백만원의 20%)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시설계획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내용 : 송이냉동저장고(단열공사, 기계시설등 관련시설 포함), 냉동·냉장차량등 관련 기계·장비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백만원 3,900	1,950	780	1,170	780	1,170
○ 임산물저장시설	10개소	3,000	1,500	600	900	600	900
○ 송이냉동저장시설	1개소	900	450	180	270	180	270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이하 “자치구”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 o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5)
- o 시·도 : 산림과(녹지과)
- o 시·군 : 산림과(녹지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1) 선정대상자

- o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2)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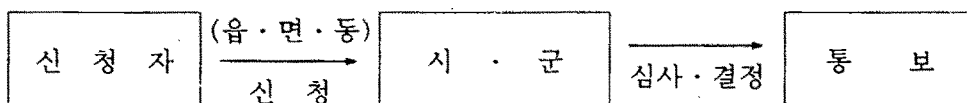
o 임산물저장시설

- ①주산단지내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② " "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③기타 지역에서 연간 단기소득임산물을 10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④ " " 5톤이상 생산하는 자
- ⑤기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o 송이냉동저장시설

- ①송이냉동저장법 특허취득자와 기술이전계약된 임업협동조합
- ②송이냉동저장법 특허취득자

(3) 선정절차



(4) 생산자 협동조직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요건(임업협동조합은 제외)

- o 생산자 협동조직(법인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일 것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법인일 것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이 생산요소인 현물(토지, 시설등)로 되어 있는 법인일 것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일 것
- o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협동조직을 선정하기 전에 협동조직 조합원의 자격 유무 등을 확인
- o 지원후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및 확인
  - 지원내용이 “시설물 설치”인 경우 시설물이 법인명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 및 토지·건물대장에 등재되었는지 여부
  -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의 매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앞으로 사업실적을 보고한 법인에게만 지원토록 할 계획임)

#### 라. 사업시행

- o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계획 작성 :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권자 : 시장·군수
- o 사업비 지원방법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관할 임업협동조합 및 신청자에 통보
  - 보조금은 시·군에서 집행
  -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융자신청
  - 임업협동조합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자체 여신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o 시·군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o 임 협 : 융자금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기준적용 근 거	비 고
	부터	까지			
임산물저장시설 - 블럭조, 콘크리트조	년도 '97	년도 2017	년간 2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적용  · 조달청 고시제92-3 (‘92.1.27)“ 내용기간”	시장·군수가 처분·이전· 타목적 사용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97	2137	40		
- 차량·기계·장비	'97	-	조달청고시 적용		

나. 보고·기타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 시·도(시·군)는 지원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제출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융자금 집행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에 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또는 읍·면·동)

나. 신청자격 : 단기소득임산물생산자 또는 생산자 협동조직. 단, 송이냉동저장 시설은 특허취득자와 기술이전계약된 임업협동조합 또는 특허취득자에 한함

다. 신청절차 :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31일 까지 시·군(또는 읍·면·동)에 제출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5항<추진체계> “자금지원예정자” 내용과 같음.

121	표고종균생산시설(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 입니다.

1. 목      적

○ 표고종균의 안정공급 및 다수확·고품질 종균개발

2. 추진방향

○ 종균생산시설 현대화 및 신품종 종균개발로 표고종균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30조, 제10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백만원 4,872	619	3,322	484	321	126
	보조	4,872	619	3,322	484	321	126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지원대상자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100% 보조(국고보조 100%)

(3) 지원사업내용

○ 표고종균 생산시설 현대화 및 종균개발 시험사업비 지원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음자		
계	개소 1	백만원 484	484	484	-	-	-
○ 표고중균생산시설	1	484	484	484	-	-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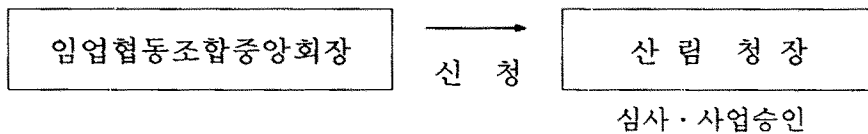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5)
- 임협중앙회 : 임산유통부(02-416-9423)

다. 대상자 선정

- (1) 선정대상자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2)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시설규모, 시험계획서 및 추진일정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시설규모, 시험계획, 기타 보조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행
-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민간자본보조)으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원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산 립 청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임협중앙회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기준적용 근 거	비 고
	부터	까지			
표고종균생산시설 - 블럭조, 콘크리트조	년도 '97	년도 2017	년간 2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적용  · 조달청 고시제92-3 ('92.1.27)" 내용기간"	시장·군수가 처분·이전· 타목적 사용 등을 승인한 후에는 제외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차량·기계·장비	'97 '97	2137 -	40 조달청고시 적용		

### 나. 보 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97. 12.31까지 보조사업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

122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1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 1. 목 적

- 단기소득임산물 포장개선으로 상품성 제고 및 생산자 소득증대
- 임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2. 추진방향

- 포장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관된 포장시스템 구축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의 원활화 및 임산물 종합 유통정보 DB시스템 구축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30조, 제35조,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	-	-	-	-	-
사업비	계	53,127	2,454	11,068	8,116	7,592	23,897
	보조	39,291	486	11,034	534	5,578	21,659
	용자	9,364	1,308	-	5,284	1,386	1,386
	자부담	4,472	660	34	2,298	628	852

※ 사업량은 세부사업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97 사업비(예산)내용” 참조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지원대상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임산물포장개선 : 총 사업비의 70% 보조(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임산물종합유통정보 DB전산화 구축 : 총 사업비의 100%보조(국고보조 100%)
  - 원료구입비·생산비 : 총 사업비의 70% 융자(국고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금리·지원기간(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원료구입비·생산비 : 연리 5%, 5년(3년거치 후 2년상환)

(3) 지원사업내용

- 임산물포장개선 : 단기소득임산물 포장기계 구입·설치비 지원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임산물종합유통정보 DB전산화 시설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자금(원료구입비·생산비) 지원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 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3	백만원 8,116	5,818	534	5,284	-	2,298
○ 임산물포장개선	2	113	79	79	-	-	34
○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8,003	5,739	455	5,284	-	2,264
- 유통정보DB구축	-	455	455	455	-	-	-
- 원료구입·생산비	-	7,548	5,284	-	5,284	-	2,264
· 원료구입비	-	4,770	3,339	-	3,339	-	1,431
· 생 산 비	-	2,778	1,945	-	1,945	-	833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5)
- 임협중앙회 : 임산유통부(02-416-9423)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지원대상자로 확정·통보받은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시설규모, 구입기계명 및 추진일정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 시설규모, 구입기계, 기타 보조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행

○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 :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민간자본보조)으로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하여 지원
- 대출금 : 산림청에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지원(세부 지원방법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임업협동조합 자체여신관련규정에 의함)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림청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임협중앙회 : 사업자의 사업추진 및 시설물 적정관리여부 지도·감독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 준	기준적용 근 거	비 고
	부터	까지			
임산물종합유통센터 - 블럭조, 콘크리트조	년도 '97	년도 2017	년간 20	· 법인세법시 행규칙 제27 조 적용	산림청장이 처분·이전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제외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차량·기계·장비	'97 '97	2137 -	40 조달청고시 적용	· 조달청 고 시제92-3('9 2.1.27)“내 용기간”	
임산물포장개선 - 차량·기계·장비	'97	-	”	”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기간(처분제한 기준연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나. 보 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97. 12.31까지 보조사업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신청자격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신청절차

-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1) 선정대상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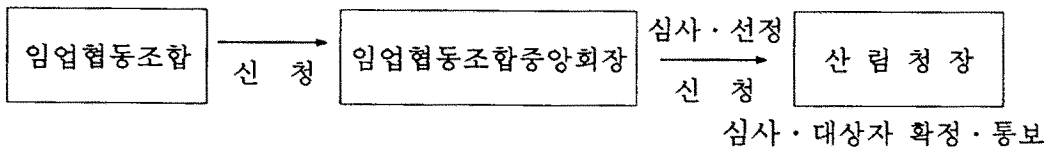
- 임산물포장개선

- ①주산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시·군으로서 일관된 포장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임업협동조합

- ②단기소득임산물 생산량이 많은 시·군으로서 일관된 포장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된 임업협동조합

- 임산물종합유통센터(임산물종합유통정보 DB전산화 구축 및 원료구입비·생산비)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선정절차



122 -2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간벌재(소경재) 활용장비)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 입니다.

## 1. 목 적

수집비용 과다등으로 산림에 방치되어온 간벌재(소경재)를 최대한 수집·이용함으로써 산주소득증대 및 목재자원의 활용도 제고

## 2. 추진방향

○ 간벌재(소경재)의 수집, 가공·이용을 위한 수집·운반·가공장비를 package화 하여 종합적으로 set지원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5조,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개소 73	45	13	5	5	5
사 업 비	계	8,995	4,434	1,459	1,034	1,034
	보 조	7,145	3,952	1,021	724	724
	자부담	1,850	482	438	310	310

※ '99년도에 사업종료 계획임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지원대상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보조(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금액 : 724백만원
- (3) 사업내용 : 간벌재(소경재)를 수집, 운반, 가공, 이용하는 기계·장비 지원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농특회계)		
		계	보 조	자 담
간벌재(소경재) 활용장비	5개소	백만원 1,034	724	31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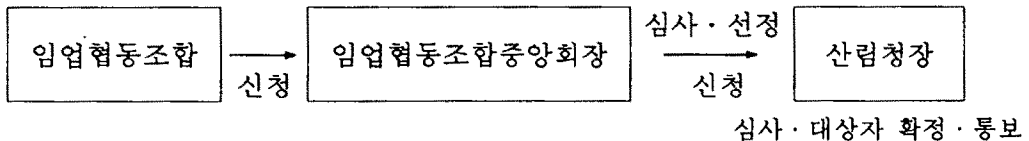
- o 산 립 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4)
- o 임협중앙회 : 임산물유통부(02-416-9423)

다. 자금지원 예정자

(1) 선정대상자

- o 주요 “산”별 시범사업단지 소재 시·군, 임업진흥촉진지역 소재 시·군, 목재 집하장·임산물종합유통센터와 연계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 중앙회로서 수집·운반·가공체계를 package화 하고자 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2)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o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지원대상자로 확정·통보받은 임업협동조합장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장비별 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제출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시·군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비구입계획과 운영계획등을 검토하여 종합구입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승인된 보조사업계획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함

○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민간자본보조)으로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지원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기계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정비등 책임관리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보조목적의 사용금지 확인 및 운영사항 수시 점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간별재(소경재)활용장비 - 차량·기계·장비	'97년도	-	조달청고시 적용	· 조달청 고시제92-3 ('92. 1.27)"내용기간"

나. 보 고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97. 12. 31까지 보조사업실적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미 지원된 기계·장비 활용실적은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신청자격

- 주요 "산"별 시범단지 소재 시·군, 임업진흥촉진지역 소재 시·군, 목재 집하장·임산물종합유통센터와 연계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로서 수집·운반·가공체계를 package화 하고자 하는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신청절차

-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전년도 8월 31일까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제출
-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  
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5항<추진체계> “자금지원예정자” 내용과 같음.

122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3	(임산물유통시설 설치)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 입니다.

### 1. 목 적

산지(產地)와 소비지를 직결하는 유통체계 구축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생산자 소득향상과 수급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산물유통기반시설 확대설치

### 2. 추진방향

- 임산물직매장, 목재집하장, 저장시설, 가공공장 등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유통구조 체계화
- 임산물의 집하, 저장, 공판, 가공 및 판매확대로 생산자의 소득 향상과 공급안정도모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35조,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개소 122	43	13	13	8	45	
사업비	계	58,311	22,194	2,823	6,668	3,958	22,668
	보조	24,675	6,052	1,976	3,334	1,979	11,334
	지방비	6,660	-	-	1,334	792	4,534
	자부담	26,976	16,142	847	2,000	1,187	6,800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지원대상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2)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보조(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3) 지원사업내용

- 임산물 직매장 : 판매시설, 창고, 부대시설등
  - 사업내용 : 임산물 및 가공품과 관련제품의 수집·공판·알선·수탁 및 매취판매로 유통비용 절감
- 목재집하장 : 집하장부지, 제품창고, 제재시설, 제재기등
  - 사업내용 : 국산재 수집·집하·가공으로 산업원료 및 목제품 안정공급
- 임산물가공공장 : 가공시설, 저장고, 가공기계·장비등
  - 사업내용 : 원료임산물의 수집·가공으로 부가가치 창출
- 임산물저장시설 : 저온저장시설, 작업장, 기계장비등
  - 사업내용 : 홍수출하기 구매비축, 비수확기 출하로 수급 및 가격안정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국고보조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13개소	백만원 6,668	3,334	1,334	2,000
임산물 직매장	10	5,420	2,710	1,084	1,626
목재 집하장	1	400	200	80	120
임산물가공공장	1	360	180	72	108
임산물저장시설	1	488	244	98	14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특별시, 광역시, 도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릫 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2)
- 시 도 : 산림과(녹지과)
- 시·군(이하 "자치구"포함) : 산림과(녹지과)

다. 자금지원예정자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라. 사업시행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지원대상자로 확정·통보받은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세부시설계획(부지위치·면적, 건물면적·용도, 구입기계·장비명 등)과 시설공사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
- 시·군은 시·도를 경유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산림청에 제출
- 시설장소 및 시설규모 기타 보조사업비의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실행

### ○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청에서 국고보조금(자치단체보조금)으로 시·도에 교부하여 시·군에서 집행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을 사후관리기간(처분제한 기준연도)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기준적용 근 거	비 고
	부터	까지			
임산물유통시설 - 불력조, 콘크리트조	년도 '97	년도 2017	년간 20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적용	산림청장이 처분·이전 등을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 차량·기계·장비	'97 '97	2137 -	40 조달청고시 적용		

나. 보고·기타

-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매분기별 시설사업 추진상황을 분기 익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보조사업의 실적확인 및 보조금의 확정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실시하고, 다음해 3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산림과 또는 녹지과)

나. 신청자격 :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신청절차

-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전년도 8월 31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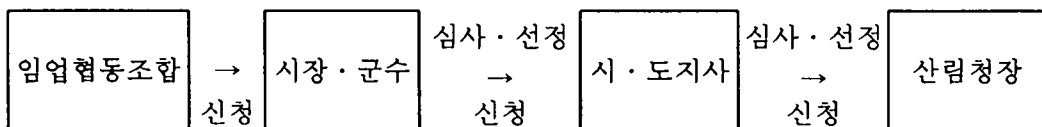
(1) 선정대상자

- 임산물직매장 : 임산물이 다량 생산되거나 수집·판매·알선 또는 소비 촉진이 용이한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 단위의 임업협동조합 또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목재집하장 : 목재유통의 거점역할로 목재 보속생산이 가능하고 집하가 용이하며 목재소비지와 교통이 편리한 시·군 임업협동조합
- 가공공장 : 가공임산물 원료공급이 용이하고 교통이 편리한 시·군 임업협동조합
- 저장시설 : 임산물 생산량이 많고 수집·저장이 용이한 시·군 임업협동조합

(2) 선정기준

- 부지를 기 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적립금 예치등 자부담력이 입증되는 시·군 임업협동조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결과 보조목적 달성이 가능한자(원료확보 방안, 시설 운영계획, 판매계획등)

(3) 선정절차



계획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1호서식】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대상자
4. 세부사업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도(시)	시(군·구)	구(읍·면)	동(리)	번지
	[위치약도(1/5,000축척지형도)첨부]				
○ 부지면적 :	(소유자명 : )				
○ 지 목 :					

- \* 위치선정 사유(주변현황 등) :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 \*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

나. 시설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규 모 (㎡)	단가 (천원/㎡)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 담
○ 부지						
○ 임산물직매장						
- 전시·판매장						
- 저장고						
○ 목재집하장						
- 관리자						
- 기계장비						
○ 임산물가공시설						
○ 임산물저장시설						

- ※ 재원조달계획중 자담분에 대하여는 적립금 예치등 증빙자료 첨부
- ※ 건물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물과 규모를 별지로 상세하게 추가작성 첨부

다. 추진일정

- 부지확보 완료 :
- 기초 및 실시설계 완료 :
- 착공 및 준공 :

5. 주요 품목별 생산량 및 유통량(과거 5개년)

(단위 : 톤)

구 분						
품 목 명	생 산 량					
	유통 량					

6. 취급예정물량 및 금액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1 일 평 균		연 평 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7. 연차별 수지전망(손익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년 도					
	수 익					
비 용						
순 손 익						

123	합판 및 보드류시설지원(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 1. 목 적

- 노후된 합판 또는 보드류시설교체를 통한 생산성 향상
- 국내재 이용 확대로 산주소득증대 및 관련산업 육성

### 2. 추진방향

- 남양재 활엽수합판 생산시설을 침엽수 합판생산시설로 교체
- 보드류 생산시설의 신·증설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55조,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21개소	7	4	2	2	6
사업비	백만원					
	계	119,346	33,630	14,286	14,286	42,858
	용자	83,541	23,541	10,000	10,000	30,000
비자부담	35,805	10,089	4,286	4,286	4,286	12,858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지원대상자

- 합판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중 침엽수합판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침엽수합판 생산시설로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3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 보드류(P.B., M.D.F. 등) 생산시설을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노후시설을 교체·증설하고자 하는 자,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소요액의 30%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자

(2)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총 사업비의 70% 용자 (국고용자70%, 자부담30%)
- 용자한도액 : 업체당 시설금액의 70%이내
- 용자금리 : 연리 7.5%
- 용자기간 : 10년 (3년거치 후 7년상환)

(3) 사업내용

- 노후화된 합판 생산시설을 침엽수 합판 생산시설로 교체하거나 신·증설( 관련 건물 포함 )
- 노후화된 보드류시설을 교체하거나 신·증설 ( 관련 건물 포함 )
- 상기 사업의 부대시설 설치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재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개소 2	백만원 14,286	10,000	-	10,000	-	4,286
합판 및 보드류시설	2	14,286	10,000	-	10,000	-	4,286

※ 용자조건 : 연리 7.5%, 3년거치 7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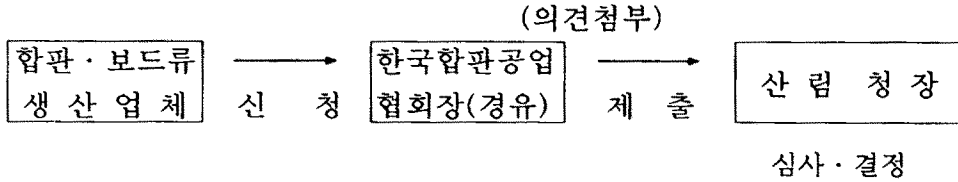
다. 자금지원예정자

- (1) 선정대상자 : 지원대상자 자격을 가진 합판 또는 보드류 생산업체로서 한국합판공업협회장을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지원 신청한 업체

(2) 우선순위

- ①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
- ② 생산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자
- ③ 생산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자
- ④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합판공업협회장에게 제출
- 한국합판공업협회장은 업체별 지원현황을 취합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

○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청장이 지원대상자별로 지원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관할 한국산업은행에 융자신청
- 한국산업은행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융자예탁및예수에관한규칙에 의거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자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한국합판공업협회장 : 본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나. 보 고

- 사업자는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한국합판공업협회장에게 결과 보고
- 한국합판공업협회장은 사업결과를 검토 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
- 한국산업은행장은 융자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합판공업협회

나. 신청자격 : 합판 또는 보드류 생산업체 ( 한국합판공업협회 회원사가 아닌 업체 포함)

다. 신청절차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전년도 8월 31일까지 한국합판공업협회장에게 제출
- 한국합판공업협회장은 각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취합,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합판·보드류시설 설치자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5항<추진체계> “자금지원예정자” 내용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 합판·보드류시설 설치자금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량 (교체,시설,중설)	총 사업비(백만원)			사 업 장 소 재 지
		계	용 자	자 부 담	
( ) 시설 설치사업					

19 . . . .

○ 신청인 주 소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산림청장 귀하

##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할 내용> . . . . . 관련자료는 첨부

1. 시설계획 개요(설치위치, 1일 및 연간생산능력, 원자재별 사용량, 가동 예정일)
2. 생산시설 현황
3. 사업운영 실적
  - 년도별 합판 및 보드류 생산실적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4. 시설 설치계획 (지원희망 시설만 기재)

생 산 공정명	기계명	규격	제조회사	수량	금 액			비고
					계	융자	자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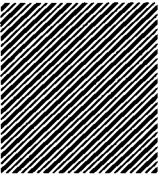
- 기계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기계명” 란에 “시설명” 을  
“수량” 란에 “시설면적” 을 기재
- “비고” 란에는 교체, 신설, 증설여부를 기재

※동 내역은 은행에 통보되어 대출시 확인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 기재

5. 월별 자금 투자계획
6.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
7. 시설설치 투자효과 분석
8. 법인가요
  - 법인 등기부 등본
  - 법인 정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여 백

### Ⅲ. 인 력 육 성



# 여 백

## 124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자율)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기술지원과입니다.

### 1. 목 적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임업인으로 육성

### 2. 추진방향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지속적인 선발
- 소유산림의 자율적 경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개선
- 임업경영실적의 철저한 사후관리

### 3. 근거법령

산림법 제10조의 2(독립가의 육성) 및 제10조의 3(임업후계자의 육성등)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계	1,422명	297	125	125	125	750
	독립가	573	123	50	50	50	300
	임업 후계자	849	174	75	75	75	450
사업비	계	59,997	10,297	3,000	4,700	6,000	36,000
	보 조	-	-	-	-	-	-
	기금융자	59,997	10,297	3,000	4,700	6,000	36,000
	지방비 자부담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의 산림경영에 소요되는 사업자금 융자지원
- 지원대상 : 독립가인정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독립가로 인정된 자와  
임업후계자선발및육성에관한규정에 의거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산림개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25명	4,700	4,700	-	4,700	-	-
독립가육성자금	50	2,700	2,700	-	2,700	-	-
임업후계자육성 자금	75	2,000	2,000	-	2,000	-	-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기술지원과(02-961-2371~5)  
임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지원부(02-416-9419~20)

- 시·도 : 농정국 산림과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각 도지회



○시·군 : 산림과, 임업협동조합

#### 다. 사업시행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사업비 지원방법

-지원규모

· 사업량 : 125명 (독립가 50, 임업후계자 75)

· 융자금 : 47억원(독립가 27, 임업후계자 20)

-지원조건

· 융자한도액 : 독립가는 3억원(30백만원까지 신용대출)  
임업후계자는 1억원(30백만원까지 신용대출)

· 융자조건 : 연 3%, 5년거치 10년상환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인정·선발된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개인별 독립가 실태조사서, 임업후계자 현황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산림경영 실적등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시장·군수는 관할 시·군 임업협동조합장과 협조하여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별로 산림공무원 1명과 임업기술지도원 1명을 전담지도원으로 지명하여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에게 정부산림 시책홍보와 산림경영 기술지도를 담당 하도록 함

○임업기술지도원과 지도담당공무원은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와 수시로 접촉 하여 산림경영실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는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나. 보고·기타

○독립가 인정 및 해제상황 보고(도) : 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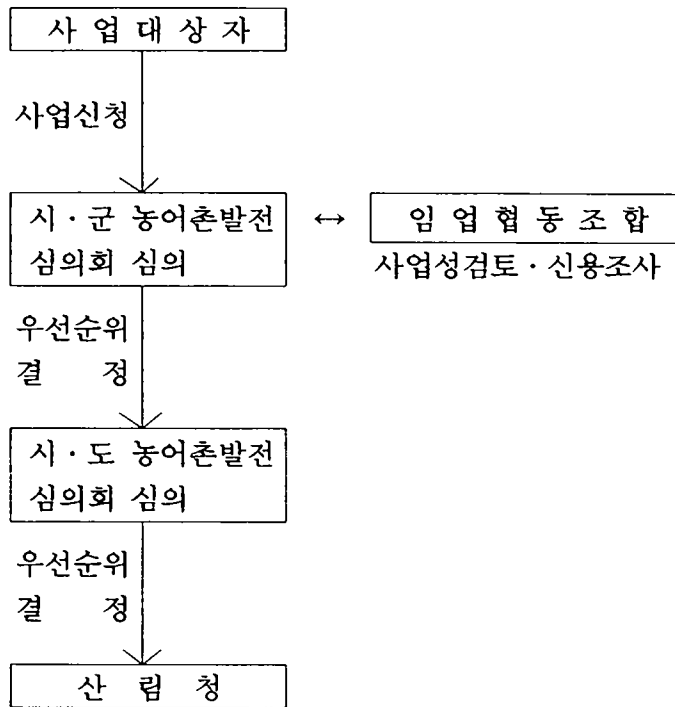
○임업후계자 선정 및 해제상황 보고(도) : 매분기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단위 임업협동조합

나. 신청자격 및 내용

-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로 인정 또는 선발된 자
-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기자재구입비와 임야매입자금, 관리인 인건비등



다. 구비서류

- 자율사업 신청서 1부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산림개발기금 용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라.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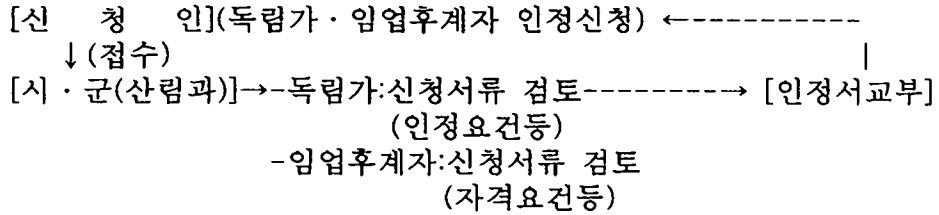
○ 독립가 인정요건

독립가구분	인 정 요 건		인정권자
개인	모범	소유산림 3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100ha이상	산림청장
	우수	소유산림 1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 용재림 50ha 이상,유실수 20ha 이상	시·도지사
	자영	소유산림 5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 용재림 20ha 이상,유실수 10ha 이상	시장·군수
법인	소유산림 500ha이상 또는 조림실적 300ha이상		산림청장

○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 선발권자 : 시장·군수
- 대상자 : 45세미만의 자로서 산림소유(사유림)이 소재하는 시·도안에  
주소를 두고 산림을 경영하려는 자중 아래사항 해당자
  - 독립가의 자녀
  - 10ha이상 산림소유자
  - 10ha이상의 국·공유림 대부 또는 분수림을 설정하여 경영하고  
있는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5ha이상의 산림소유자
  - 전문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임업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버섯,분재소재,야생화,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

○ 인정 및 선발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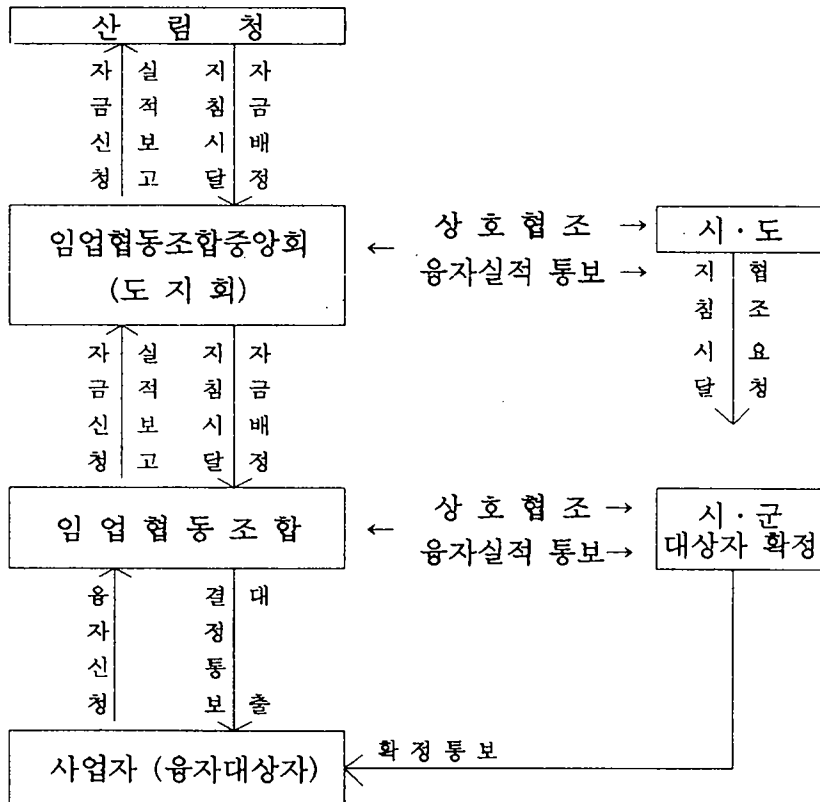
※구비서류

- 독립가 : 독립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소유산림경영내역서
- 입업후계자: 입업후계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선정절차(자금유자)

독립가·입업후계자로 인정 및 선발된 자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할 임업협동조합에 신청하면 현지확인 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함

-독립가는 한국독립가협회장 추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독립가인정신청서		처리기간		
		모범법인	40일	
		우수	25일	
		자영	1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상호		⑤ 협업체명	
<p>본인은 독립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독립가로 인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임업후계자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사 진 (반명합판)
신청인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전화 번호	
	최종학력	학교 과, 전공 졸업등		졸업년월일	
사업분야	(목재생산, 버섯재배, 관상수재배, 복합임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산림경영 규모 등	소재지 :	시·도 시·군 면 리 산 번지의 필지			
	총면적 :	ha (본인소유 : ha, 기타 : ha)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주요경력 (자격증, 포상,교육 훈련등의 주요경력)	일자 또는 기간	내 용			비 고
본인은 산림법 제10조의 3,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9 및 임업후계자선발 및 육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하여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산림법시행규칙 제9조의 9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 산림개발기금융자신청서

사업명	세 부 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사업소재지
				계	융자	자담	보조	

199 . . . . .

○ 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화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가. 소유권 확인서 1부.

나. 사업계획서(시설공사에 한함) 1부.

다.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라. 기타 필요한 서류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125 -1	<b>임업전문인력양성(공공) (임업기능인훈련)</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입니다

## 1. 목 적

- 농산촌 인력난에 따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임업기능인 양성
- 임업기능인작업단(영림단) 운영으로 임업의 산업화 도모

## 2. 추진방향

- 임업기능인 훈련
  - 임업경영에 관한 기본이론 및 현장 산림사업기술 훈련
  - 임업기계화를 위한 임업기계장비의 조작·정비훈련
  - 국가기술자격(영림기능사)을 갖춘 전문임업인으로 육성
  - 목가공기술훈련 및 산림내 소득작물훈련으로 농외소득증대
- 임업기능인훈련원 운영
  - 임업기능인훈련원의 효율적 운영
  - 훈련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 3. 근거법령

- 산림법제10조의3(임업후계자의 육성등)
- 산림법시행령제16조(임업분야의 기능인 육성)
- 산림법시행규칙제9조의12(임업기능인의 교육훈련)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3개소	
사업비	계	17,035	2,865	1,083	1,163	1,257	10,667
	보조	17,035	2,865	1,083	1,163	1,257	10,667
	융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 개요>

##### 가 사업내용

##### ○ 추진 배경

우리나라 산림은 녹화기를 지나 육림 및 경영단계에 도달함으로써 과거 단순녹화위주의 임업노동에서 질적수준이 높은 기술임업노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양질의 기술인력이 필요하며, 농산촌 인구의 노령화, 부녀화 및 공동화로 임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아니라 임업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계를 조작·운용하는 전문기능인이 필요함에 따라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한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 지원내용

- 임업기능인훈련사업비 지원(영림단의 신규 및 보수훈련)
-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 지원대상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기능인훈련원(강릉임업기계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진안임업기능인훈련원)

##### ○ 지원조건: 국고보조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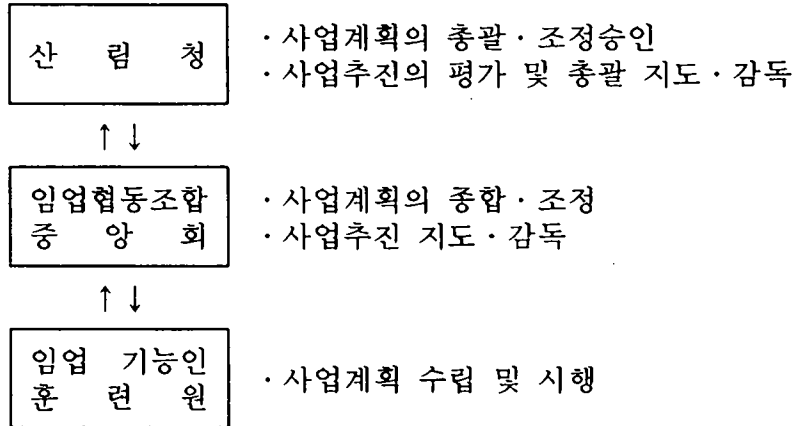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계		3개소	1,163	1,163	1,163	-	-	-
강릉 훈련원	소 계		886	886	886	-	-	-
	인 건 비	32인	354	354	354	-	-	-
	경상비및훈련사업비		223	223	223	-	-	-
	교육훈련장비 교체	2대	141	141	141	-	-	-
	목가공교육실 시설	1동	168	168	168	-	-	-
양산· 진안임업 훈련원	소 계		277	277	277	-	-	-
	인 건 비	10인	90	90	90	-	-	-
	경상비및훈련사업비		152	152	152	-	-	-
	중형버스구입(진안)	1대	35	35	35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961-2413~4)

다. 사업시행체계



라. 사업추진일정

일 정 별	사 업 내 용	추 진 부 서
전년도 3. 31일까지	· 사업신청	임협중앙회 → 산림청
전년도 5. 31일까지	· 사업신청서 심사 및 검토 · 재경원에 예산요구	산림청 → 재경원
전년도 10. 15일까지	· 다음년도 가예산 통지	산림청 → 임협중앙회
전년도 11. 30일까지	· 다음년도 사업계획승인신청	임협중앙회 → 산림청
당해년도 1. 15일까지	· 사업계획 승인	산림청 → 임협중앙회
당해년도 7. 10일까지	· 상반기사업실적보고	임협중앙회 → 산림청
당해년도 12. 31일까지	· 연간사업실적보고 및 보조금 정산	임협중앙회 → 산림청

#### 마.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기능인훈련원으로부터 '97년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96. 11. 30일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는다(임업기계훈련원위탁·관리규정 제17조제3항, 별지제1호서식).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임업기계훈련원위탁·관리규정 제17조제4항).

##### ○사업비 지원방법

훈련사업비 지원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임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보조금으로 교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각 임업기능인훈련원의 훈련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각 임업기능인훈련원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영림단교육 훈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은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한다.

#### 나. 보고·기타

- 임업기능인훈련사업실적 보고(임업기계훈련원위탁·관리규정 제16조)
  - 상반기 보고 : 반기 익월 10일까지
  - 연말종합보고 : 익년도 1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 임업기능인훈련사업계획서

### I. 목 표

### II 추진방향

### III. 사업별 추진계획

#### 1. 임업기능인훈련계획

##### 가. 과정별 훈련계획

훈련과정	훈련방법	훈련기간	훈련회수	훈련인원		훈련대상	훈련내용
				기당	연인원		

##### 나. 관서별 피교육자 현황

기관별 훈련과정	계						
계							

#### 2. 실습립 경영계획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 IV. 예산집행계획

<기관명>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국고보조	자부담
계				
1. 인건비				
2. 훈련사업비				
가. ○○과정				
나. ○○과정				
다. ○○과정				
3. 실습림등 기타사업비				
가.				
나.				

125 -2	<b>임업전문인력양성(공공)</b> <b>(임업기능인영립단장비지원)</b>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 입니다.

**1. 목 적**

- 조립, 육립, 병해충방제등 각종 산림작업을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립단이  
실행하므로써 산림사업의 전문화 및 임업생산성 향상
- 임업기능인은 농산촌 주민을 중심으로 육성

**2. 추진방향**

- 「영립단」을 산림사업 전문작업단으로 육성
- 산주위탁사업 및 정부보조사업 중점대행
- 「영립단」을 농산촌의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

**3. 근거법령**

산림법 제10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453단 (5,436명)	112단 (1,344명)	31단 (372명)	30단 (360명)	40단 (480명)	240단 (2,880명)
사 업 비	계	11,296	2,490	474	566	1,109	6,657
	보 조 용 자	11,296	2,490	474	566	1,109	6,657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배경 : 농산촌 인력난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임업노동력 확보
- 사업시행주체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시·군 임업협동조합
- 지원대상자 : 신규 영림단
- 사업내용
  - 임업기능인으로 조직된 영림단에게 사업실행시 필요한 기본장비 구입비 지원
  - 사업량 : ('95) 172단 2,124명 → (2010) 763단 9,150명
    - ※ '96 신규조직 : 31단 372명
  - 장비지원내용 : 1단당 12명 기준

기계톱	예불기	고지절단기	천공기	원 치	차량	무전기	무육도구	안정장비
6대	4대	4대	4대	1대	1대	3대	12조	12조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30단 (360명)	566	566	566	-	-	-
민유림 영림단 증 설	30단 (360명)	566	566	566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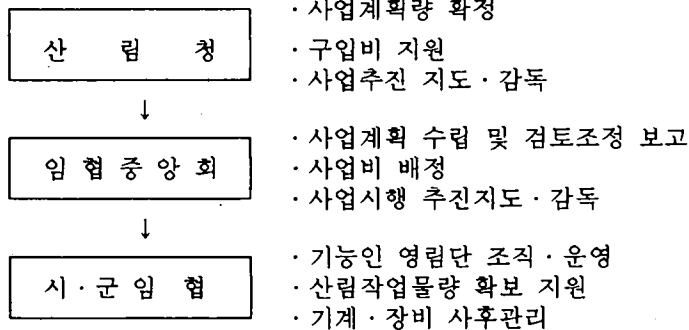
- 주 관 : 시·군임업협동조합장
- 협 조 : 시장, 군수

###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961-2415)
- 시·도 : 녹지과 또는 산림과
- 시·군 : 녹지과 또는 산림과
- 임협중앙회 : 경영부(02-416-9418)
- 시·군임협 : 사업과

### 다. 사업시행

-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수행주체 : 시·군 임업협동조합
  - 사업 추진



#### - 지원형태 및 기준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기 준 : 국고 100%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시·군임업협동조합장
- 사후관리절차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장비구입활용 및 운영체계등

### 나. 보고사항

- 임업기계·장비 운영 실적 보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임업기계·장비의 운영실태를 다음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익월 10일까지 실적을 산림청(산림경영과)에 제출

※ 보고서식

(단위 : 대)

기종별	보 유 량					부 품 보유량	운 영 실 태				년간 사용 일수	추 가 소요량
	계	국고	자체	5년 이하	5~ 10년		계	사용가	불가	수리후 사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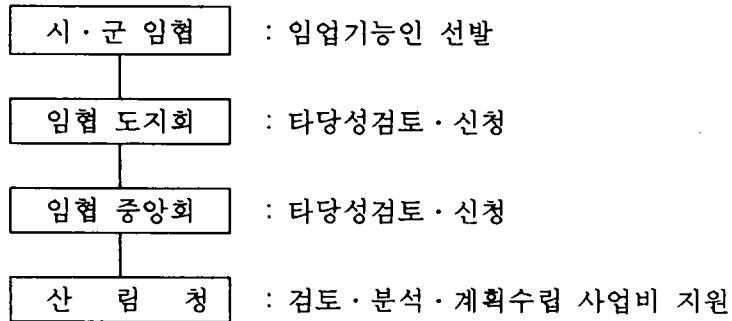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신청자격(대상자 선정)

- 기관 : 시·군 임업협동조합
- 기준 : 영림단조직이 필요하고 임업기능인 대상인원이 확보된 조합
- 우선순위
  - ① 임업진흥촉진지역이 많은 시·군
  - ② 산림사업량이 많은 시·군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임업기능인 대상자 인적사항

조합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격중소지여부	산림사업종사년도

※ 조합당 : 12명 기준

126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토목과 입니다.

**1. 목적**

임도시설 등 특수산림토목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시·군임협 및 산림개발 사업단에 임도시공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전문화를 통한 임업생산성 향상 도모

**2. 추진방향**

- 시·군임협 및 산림개발사업단을 산림토목사업의 전문실행 조직으로 육성
- 산림사업의 전문화, 기계화를 통한 산지자원화 촉진 및 임업생산성 향상
- 견고한 임도시공으로 산림재해 및 안전사고예방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의2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대,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269	104	33	33	66	33
사업비	계	17,345	3,365	2,796	2,796	5,592	2,796
	보조	17,318	3,338	2,796	2,796	5,592	2,796
	융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27	27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 임도시공장비지원 사업

산림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임업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토목사업에 필요한 임도시공장비를 임업협동조합 및 산림개발사업단에 굴삭기 지원

##### ○ 지원대상자

시·군임협 및 산림개발사업단

##### ○ 지원규모

- 임업협동조합 및 산림개발사업단에 임도시공에 필요한 굴삭기 1대씩 연차적으로 지원

· 시·군임협조합 141대 지원(1대/조합당)

· 산림개발사업단 24대 지원

##### ○ 지원조건

전액국고보조로 지원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대,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음자		
계	33	2,796	2,796	2,796	-	-	-
임도시공 장비지원	33	2,796	2,796	2,796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 [(02) 961 ~ 2364]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개발부 [(02) 416 ~ 9418]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민유임도를 시공하는 임업협동조합(서울, 울릉조합 제외)
  - 국유임도를 전담 시공하는 산림개발사업단
- 우선순위
  - 전년도 임도시공 실적이 많고 임도시공이 양호한 조합
  - 당해년도 임도시공물량이 많고 중기운전기사를 보유하거나 확보가능한 조합
  - 자립기반이 취약하여 임도시공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조합
- 선정절차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시급한 조합을 선정 연차적으로 지원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 1월 : 장비지원계획 수립
  - 2월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3 ~ 6월 : 장비구입 현지배치 완료
  - 7 ~ 12월 : 사업 실행
- 사업계획 변경  
사업실행 등에 따라 변경요인 발생시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실행
- 사업비 지원방법(실행체계)
  - 산 립 청 : ·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  
재정경제원에 예산 신청하여 소요예산 확보  
·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시달
  - 임협중앙회 : · 익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신청  
· 산림청 사업지시에 따라 장비구입 시 · 군임협조합에 배정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장비운영 · 관리실태 지도감독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 터	까 지		
임도시공장비 (굴삭기)	구입년도	6년	임협중앙회 회계규정 및 법인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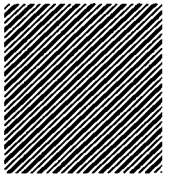
### 나. 보고·기타

- 시·군임협의 임도시공장비 운영실적 보고(년보)
- 사업단운영실적 보고(반년보)

여 백



## IV. 환 경 임 업 육 성



# 여 백

127	산림휴양공간 조성 (공공)
-1	(자연휴양림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계획과 입니다.

## 1. 목 적

-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제공 및 농산촌지역사회 균형발전 및 산주소득증대 도모
- 산림내에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건전사고 함양 및 체험에 의한 자연학습공간 조성제공
  - 2004년까지 110개소의 산림휴양시설 확충 -
    - 자연휴양림 : 65개소
    - 산림욕장 : 45 "

## 2. 추진방향

- 야외휴양수요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조성
- 휴양림 조성을 통한 산촌소득원 개발
- 휴양림 구역은 입지여건을 감안 최대한 확대지정
- 산림훼손의 최소화로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
- 지리적 여건 및 휴양수요 특성에 부합하는 휴양공간 조성
- 입상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산림경영 병행추진
- 휴양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의 내실화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31조 ~ 제33조
- 자연휴양림조성·관리운영지침(산림청 예규 제 429호)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10	50	10	6	7	37	
사업비	계	143,610	30,505	11,641	12,683	12,683	76,098
	보조	63,888	8,915	5,549	6,178	6,178	37,068
	융자	23,310	12,110	1,120	1,260	1,260	7,560
	지방비	47,620	5,488	4,492	4,705	4,705	28,230
	자부담	8,792	3,992	480	540	540	3,240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사업내용

- 국민휴양수요 충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 시설의 종류 : 오솔길, 야영장, 산림욕장, 순환로, 등산로, 숲속의집, 방문자 안내소, 취사장, 화장실, 자연관찰로 등

##### (2) 지원규모 및 조건

- 국유림 : 개소당 12억원(전액 국고보조)
- 공유림 : 개소당 12억원을 2년간 분할지원(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유림 :
  - 12억원을 기준으로 70%까지 융자지원(융자 70%, 자부담 30%)
  - 3년거치 7년상환(년리 5%)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 일반)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9	12,683	7,438	6,178	1,260	4,705	540
• 자연휴양림	21	9,483	5,838	4,578	1,260	3,105	540
- 설 계	2	83	58	58	-	25	-
- 조 성	6	3,600	2,520	2,520	-	1,080	-
- 보 완	10	4,000	2,000	2,000	-	2,000	-
- 융 자	3	1,800	1,260	-	1,260	-	540
• 산림욕장	8	3,200	1,600	1,600	-	1,600	-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후 7년상환, 융자금은 농특회계 융자금임.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1) 국유림 :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장
- (2) 공유림
  - 시·도유림의 경우 : 시·도지사
  - 시·군유림의 경우 : 시장·군수
- (3) 사유림 : 시·도지사

## 나. 사업담당부서

- o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 (02 - 961 - 2338)
- o 시·도 : 농정국 산림과(산지이용과)
- o 시·군 : 산림과(녹지과)

## 다. 대상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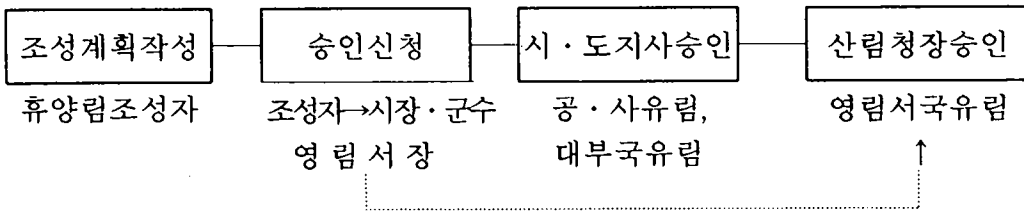
- o 선정기준
  - 지정권자 : 시장·군수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된 사유림중 시·도지사로부터 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선정
  - 대상지선정
    -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임상이 울창한 산림
    - 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 1단지 구역면적이 국·공유림은 100ha이상, 사유림은 30ha이상의 산림

## o 선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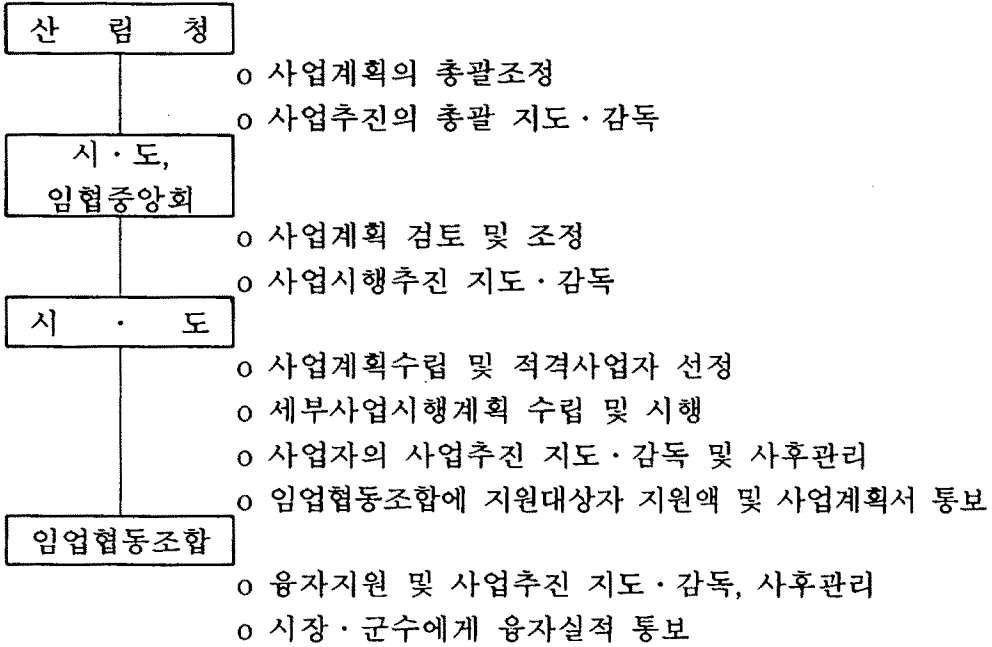
신청    심사(농발심의회)  
사업자 → 사업자 시장·군수 → 선정결과를 지원대상자 및 관할 임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

## 라. 사업시행

### o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비 지원방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관할 임업협동조합장

(2) 사후관리철저

- 휴양림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시설운영 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보 고 명	보고종류	보 고 기 한
○ '97 공·사유림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사항 보고	수 시	승인후 10일 이내
○ '97 자연휴양림 조성(보완)결과 보고서	즉 시	준공직후
○ '97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년 보	'98년 1월초
○ 자연휴양림 조성 이력카드	수 시	
○ '97 산림욕장 조성결과 보고	즉 시	준공즉시
○ 숲속교실 운영계획대 실적	년 보	익년 1월초
○ 국고보조금 정산 실적보고	년 보	사업완료 즉시

127	<b>산림휴양공간 조성(공공)</b>
-2	<b>(산림박물관건립 및 수목원 조성)</b>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계획과 입니다.

### 1. 목 적

- 지역향토수종등 가치있는 유전자원과 산림사료의 영구적 보존·전시 및 학술연구를 통하여 산림문화 창달과 대국민 자연학습장 제공

### 2. 추진방향

#### 가. 박물관건립

- 2004년까지 권역별(중앙, 강원, 충남, 호남, 영남)로 1개소씩 건립
-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건립
- 산림훼손의 최소화로 자연경관 유지보전

#### 나. 수목원조성

- 2004년까지 각도별 1개소씩 9개도 조성
- 지역향토수종, 각종 희귀식물등 가치있는 산림자원 보전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4조~34조의 2
- 수목원조성·관리운영지침(산림청예규 제424호)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 량	계	22	9	2	2	2	7
	박물관	10	2	1	1	1	5
	수목원	12	7	1	1	1	2
사업 비	계	100,270	33,458	5,880	10,526	10,526	39,880
	보조	50,135	16,729	2,940	5,263	5,263	19,940
	용자	-	-	-	-	-	-
	지방비 자부담	50,135	16,729	2,940	5,263	5,263	19,940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산림박물관
  - 박물관, 내부전시물 및 각종 부대시설 설치등
- 수목원 조성
  - 전시원, 온실, 교육동, 묘포장, 관리사, 주차장, 관찰로, 순환로, 조경시설등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7	10,526	5,263	5,263	-	5,263	-
산림박물관	4	6,276	3,138	3,138	-	3,138	-
수 목 원	3	4,250	2,125	2,125	-	2,125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 [(02) 961 - 2338]
- 시·도 : 농정국 산림과
- 시·군 : 산림과(녹지과)

다.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박물관 : 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되, 대상지는 도지사 책임하에 선정
  - 수목원 :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되, 대상지는 해당 시·도지사 책임하에 선정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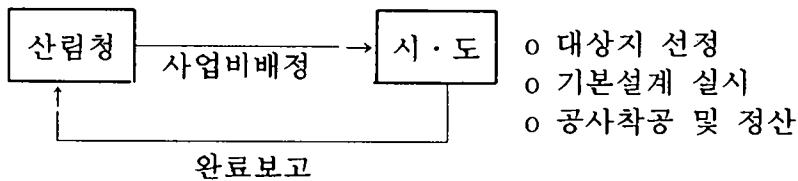


○ 선정절차

- 박물관 : 산림사료의 영구보존 및 전시로 국민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도별로 1개소씩 건립
- 수목원 : 지역향토수종 및 각종 희귀식물등 산림자원 보전차원에서 각도별 1개소씩 조성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비 지원방법

- 산림박물관 : 총 80억 규모를 4년계획으로 추진(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수목원 : 총 30억 규모를 4년계획으로 추진(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장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
- 사후관리 철저
  - 조성시설 추진상황 점검
  - 시설 운영여부 확인

나. 보고·기타

- 설계보고 : 설계완료 즉시 보고
-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보호과 입니다.

## 1. 목 적

산불방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소중한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의 보호·육성과 산불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국토보전에 기여

## 2. 추진방향

- 헬기확충 및 진화장비 현대화로 진화의 효율성 제고
- 전문진화대 조직·운영으로 산불진화 초동진화 능력배양

## 3. 근거법령

산림법 제100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 사업량						
-헬기도입 (대)	27	12	3	5	4	3
-경비행기 도입 (대)	3	1	-	-	1	1
-밤비바켓 (개)	45	5	5	5	20	10
-산불진화차 (대)	198	3	20	55	60	60
-휴대용무전기 (대)	4,815	2,000	600	615	800	800
-간이수조 (개)	700	-	100	100	200	300
-휴대용진화총 (대)	239	-	-	79	80	80
-산불경방탑 (동)	800	240	60	100	200	200
-무인감시카메라 (set)	3	-	-	1	1	1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무선기지국	(개)	40	-	-	13	13	14
-진화급식비	(천명)	1,433	800	100	133	200	200
-진화출동비	(천명)	200	-	-	40	80	80
-지방격납고		5	2	1	1	1	-
		백만원					
계		849,040	33,775	72,201	85,869	93,885	563,310
사업비	국비	301,755	17,912	222,363	30,515	32,995	197,970
	보조	12,689	909	676	1,276	1,404	8,424
	지방비	534,596	14,954	49,162	54,078	59,486	356,916
	자부담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가. 지원배경 : 매년 산불발생건수가 증가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으나 농산촌 인구감소, 노령화로 인력진화가 어려워 인명,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므로 정부차원의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국고지원

### 나. 사업내용

- 헬기도입 : '99까지 35대 확보
  - '96현재 23대 (대형 9대, 중형 12, 소형 2)
- 경비행기를 이용한 공중감시체계 구축
- 지상지화장비 현대화 및 확대보급
- 전문진화대 조직운영 및 지방격납고 신설

다.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70%

라.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국 비	보 조	음 자		
계		85,869	백만원 31,791	30,515	1,276	-	54,078	-
헬기 (대)	5	13,200	13,200	13,200	-	-	-	
밤비바켓 (개)	5	55	55	55	-	-	-	
산불진화차 (대)	55	1,650	600	150	450	-	1,050	
휴대용무전기 (대)	615	492	156	12	144	-	336	
간이수조 (개)	100	200	60	-	60	-	140	
휴대용진화총 (대)	79	514	223	98	125	-	291	
산불경방탑 (동)	100	200	60	-	60	-	140	
무인감시카메라 (set)	1	150	150	150	-	-	-	
무선기지국 (개)	13	933	933	933	-	-	-	
진화급식비 (천명)	133	666	200	-	200	-	466	
진화출동비등 (천명)	40	790	237	-	237	-	553	
지방격납고 (동)	1	1,972	1,972	1,972	-	-	-	
헬기운영,기타		65,047	13,945	13,945	-	-	51,102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립 청 : 보호과
- 시 · 도 : 녹지(산림)과
- 시·군자치구 : 녹지(산림)과

다. 사업시행

- 산 립 청 : 산불방지대책 수립, 시·도별 시달
- 시 · 도 : 산불방지대책 수립, 시·군별 시달
- 시·군·구 : 산불방지활동, 산불진화장비 구입, 감시원 배치 등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산불방지 추진상황 지도점검 실시 (2회 : 봄철, 가을철)

나. 보 고 : 산불방지 추진상황 보고 (2회 : 봄철, 가을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토목과 입니다.

### 1. 목 적

황폐지(산지·해안·계천)를 복구녹화하여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재해예방과 수원함양·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

### 2. 추진방향

-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계통사방 실시  
산정 → 산복 → 댐 → 야계
- 5대강유역·임업진흥촉진지역·산별시범단지내 우선 실시
- 적지적공법에 의한 완벽한 복구

### 3.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은 이를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산지사방(ha)	3,045	1,247	58	190	170	1,380
	예방사방(ha)	706	176	30	20	60	420
	해안사방(ha)	86	41	10	25	10	-
	야계사방(km)	2,031	509	102	50	170	1,200
	사방댐(개소)	1,354	249	45	70	200	790
사 업 비	계	541,718	75,042	21,421	26,383	64,748	354,124
	보 조	380,529	52,866	15,047	19,405	45,324	247,887
	지 방 비	161,189	22,176	6,374	6,978	19,424	106,237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 산지사방

- 자연황폐지, 밀린땅, 산사태발생지등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공작물의 시설 및 지피식생 조성을 위한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 예방사방

- 주택가, 산업시설주변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임.

##### ○ 해안사방

- 해안모래언덕의 이동 및 모래날림방지를 위한 울타리시설과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임.

##### ○ 야계사방

- 산간 황폐계곡의 산기슭을 고정하고 물의 흐름을 완화시켜 계상의 침식방지 및 계류를 정비하는 공사임.

##### ○ 사 방 댐

- 황폐계천의 토사·자갈이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횡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임.

※ 댐에는 저사·저수가 겸하도록 시공하여 산불진화용수, 농업용수등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백만원 26,383	19,405	19,405	-	6,978	-
산지사방	190ha	6,387	5,364	5,364	-	1,023	-
예방사방	20ha	926	648	648	-	278	-
해안사방	25ha	366	300	300	-	66	-
야계사방	50km	6,673	4,671	4,671	-	2,002	-
사 방 댐	70개소	12,031	8,422	8,422	-	3,609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토목과(02-961-2362)
- 시도 : 농정국 산림과(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
- 산림환경연구소 : 사방사업과

다.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사방사업은 황폐산지 또는 황폐계천을 대상으로 토사유출등으로 하류의 농경지·산업시설에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경관보전에 저해가 되는 곳에 시공
  - 사방사업은 특정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가에서 실행하는 사업임.
  - 개인 또는 공공단체에서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기소유 토지안에서 자력으로 사방사업을 실행할 수 있음.
- 우선순위
  - ①가옥·산업시설, 공공시설 피해우려가 있는 곳
  - ②농경지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 ③자연경관보전에 저해되는 곳 등
- 선정절차
  - 산림환경연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산림환경과)에서 사방사업 대상지의 일괄 조사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실행함.
  - 그러나 지역주민이 각급행정기관을 통하여 사방사업 실행을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 실행할 수 있음.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 11~12월중순 : 익년도 사업예정지 선정
    - 1~ 2월 : 사업실행설계서 작성
    - 3~ 6월 : 춘기사업 실행
    - 9~12월 : 추기사업 실행



- 계획변경
  - 설계금액 또는 설계사업량의 20%이상 증감시는 산림청장의 승인
  - 설계금액 또는 설계사업량의 10~20%미만 증감시는 시·도 지사의 승인
  - 설계금액 또는 설계사업량의 10%미만 증감시는 산림환경연구소장 승인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실행 체계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 재정경제원  
↓↑ 과 협의 국고소요액 확보 및 시·도에 사업계획 시달
    - 시·도 : - 익년도 사업계획량에 대한 예산신청  
↓↑ - 산림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사업량에 대한 지방비 확보 및 산림환경연구소에 사업 지시
    - 산림환경연구소 : - 익년도 사업계획량에 대한 예산신청  
(특·광역시 녹지과, - 사업실행 예정지선정 및 사업설계·실행  
제주도 산림환경과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마. 기타사항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방사업을 실행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후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산주 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되, 이 경우 사후관리비는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음.

나. 보고·기타

- 사업설계 및 실행상황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고사항

130	산림생태보전(공공)
-1	(산림환경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과입니다.

### 1. 목적

- 산림지역의 대기오염 및 산성비 실태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피해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임업적 대처방안 수립

### 2. 추진방향

- 전국 산림의 산성비 피해조사체계 강화
- 산성비와 산림쇠퇴간의 인과관계 규명
- 산성비 피해지역 산림의 회복실연사업 추진
- 동북아 지역국가간 산성비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

### 3. 근거법령

- 산림법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 2

###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4과제	-	1	1	1	1
		백만원					
사	계	4,918	-	344	426	593	3,555
	- 보 조	4,003	-	344	341	474	2,844
업	- 용 자	-	-	-	-	-	-
	- 지 방 비	915	-	-	85	119	711
비	- 자 부 담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배경

- 전국 산림지역의 대기오염과 산성비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산림피해의 확산 방지 및 회복방안 강구

- (2) 지원대상 : 도, 산림환경연구소
- (3) 지원조건 : 사업비 80% 국고지원
- (4) 사업내용

○ 산림환경 오염관리를 위해 아황산가스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산림피해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 평가하고 피해산림의 회복방안을 강구하여 산림 생태계의 안정화 도모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역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자		
계	1과제	백만원 426	426	341	-	85	-
산림환경오염관리	1과제	426	426	341	-	85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산림청 : 지침시달
- 도 : 사업비 배정, 사업지도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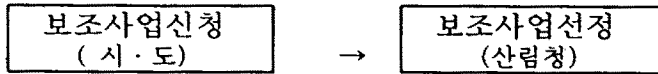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환경과(02-961-2382~3)
- 도 : 산림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다. 대상자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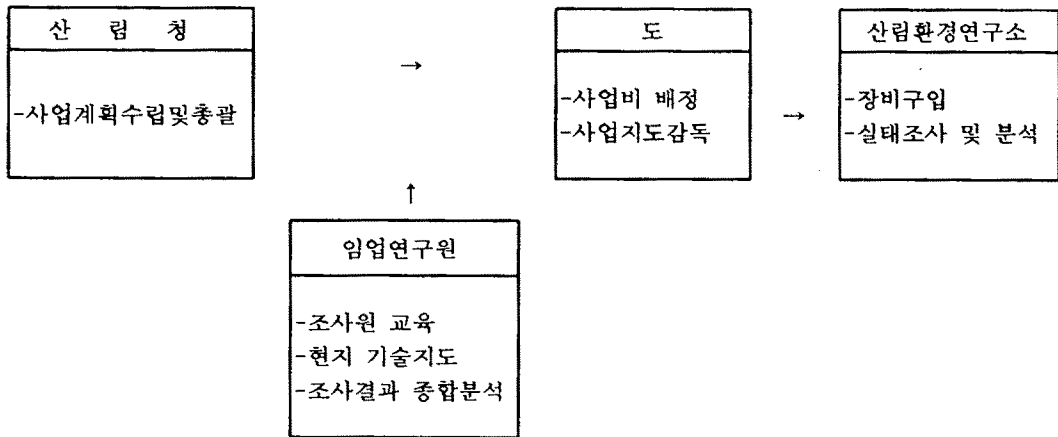
- 선정기준
  - 보조사업 신청물량을 감안, 시·도별 사업대상자를 심사, 선정
- 우선순위
  - 산성우 측정장비 구입은 기본조사장비 구입 우선

○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원

○ 기타사항

- 산림환경오염관리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산림환경연구소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 추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시행부서에서 책임 사후관리

나. 보고·기타

- 산림환경연구소 : 임업연구원에 보고(분기보)
- 임업연구원 : 산림청에 보고(반년보)

\* 단, 현지조사결과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도를 경유하여 임업연구원에 보고하고, 임업연구원은 조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산림청에 보고

130	산림생태보전(공공)
- 2	(산림입지조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입니다.

### 1. 목 적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입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과학적인 산림경영 도모

### 2. 추진방향

- 산지이용체계 재편과 연계하여 5개년('95 ~ '99)계획으로 조사
- 산별 시범사업단지, 생산임지, 임업진흥촉진지역등 활용도가 높은 지역 우선 조사
- 입지조사 기술축적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조사 전담직원을 지정, 책임 조사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의2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천ha)	6,455	1,519	1,100	1,000	1,400	1,436	
사 업 비	계	2,560	1,838	2,277	2,251	3,071	3,123
	보 조 용 자	12,560	1,838	2,277	2,251	3,071	3,123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 사업내용

산림토양의 특성, 생산능력(지위), 이용가능성(지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산림입지도를 작성하여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기반 조성

##### ○ 지원대상

- 국유림 :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
- 민유림 : 시·도(시·군·구)

##### ○ 지원규모 및 조건

- 국유림 : 200천ha( 611백만원)
- 민유림 : 800천ha(1,640백만원)

※ 기준보조율 : 국고 100%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000천ha	2,251	2,251	2,251	-	-	-
국유림(국특)	200천ha	611	611	611	-	-	-
민유림(일반)	800천ha	1,640	1,640	1,640	-	-	-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나. 사업담당부서

- 산 릫 청 :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961-2418)
- 시 · 도 : 농정국 산림과(지방산림관리청)
- 시·군자치구 : 산림과(녹지과)(국유림관리소)

다. 자금지원 예정자

- 국유림 : 지방산림관리청장(국유림관리소장)
- 민유림 : 도지사(시장·군수)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지방청(국유림) 및 지방자치단체(민유림)에서 신청한 사업량을 검토 재경원에 예산요구하여 소요예산(국비)확보
  -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달
- 사업비 지원방법
  - 입지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수용비,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
  - 재원확보 : 국유림(국특회계), 민유림(일반회계)
  - 집행절차: 시·도 및 지방청은 보조금예산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착수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산림입지도 비치 활용

나. 보고, 기타

- 조사진도 보고(분기보)
-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내역 보고(년보)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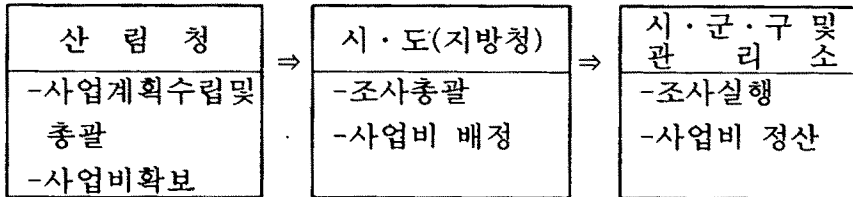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국유림 : 지방산림관리청
- 민유림 : 시·도

나. 신청자격

입지조사 미조사 지역의 시장·군수 및 국유림관리소장

다. 신청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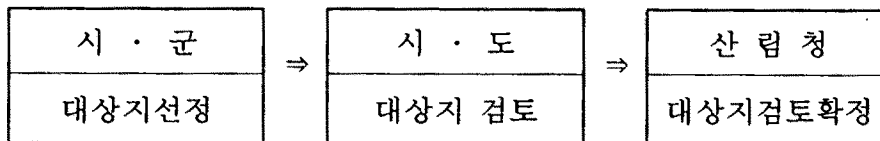
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산별시범사업단지, 생산임지, 임업진흥촉진지역등 활동도가 높은 지역  
부터 우선조사
- 산지이용체계재편과 연계하여 5개년('95~'99)계획으로 「면」 별 완결주의  
방침에 따라 조사
- 영림계획(산림조사) 대상지와 산림입지조사 대상지를 연계하여 조사  
함으로써 효율적 사업추진 도모

○ 선정절차

- 선정권자 : 국유림(국유림관리소장), 민유림(시장·군수)
- 선정절차





130 -3	산림생태보전(공공) (야생조수보호)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환경과 입니다.

### 1. 목적

- 야생조수 보호중식 및 서식밀도 조사로 자연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유해 조수로부터 농림어업의 보호를 위한 적정 수렵장운영으로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 2. 추진방향

- 야생조수실태조사 및 조수보호구설정 확대와 서식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 수렵장 적정운영 및 야생조수 불법포획단속 강화
- 철새탐조시설등의 설치 활용으로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 조수보호 국제협력강화

### 3. 근거법령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3조, 제6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967	249	63	74	83	498
- 조수서식실태조사		369명	72	18	27	36	216
- 서식환경조성		52종	16	4	4	4	24
- 보호수의과수술		520본	160	40	40	40	240
- 철새조망시설		8개소	-	-	1	1	6
- 시범조수사육시설		18개소	1	1	2	2	12
		백만원					
사업비	계	29,370	1,396	392	2,596	3,146	21,840
	- 보조	7,521	717	167	649	798	5,190
	- 융자	-	-	-	-	-	-
	- 지방비	4,903	379	80	416	518	3,510
	- 자부담	-	-	-	-	-	-
	- 국특	16,946	300	145	1,531	1,830	13,140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지원대상자

- 재정자립도가 낮고 야생조수서식밀도가 높은 도의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
- 주요철새도래지가 있는 시·군에 중점지원
  - ※ 주요철새도래지  
천수만, 금강, 한강, 낙동강, 철원평야, 아산만, 동진강, 주남저수지, 대청호  
삼교호(10개소)
- 국가기관인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시범수렵장 운영예산 지원

#### (2) 지원조건

- 야생조수실태조사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서식환경조성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보호수의과수술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철새조망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시범수렵장운영 : 국고 100%

#### (3) 사업내용

- 국제적 규모 및 GREEN GNP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야생조수 실태조사 규모확대(전국 810개소, 24,360ha)
  - 조사원의 증원 : '96 각도 2명 → '97 3명 → '98 4명
- 조수보호구의 일제조사로 지정 가치가 상실된 보호구 해제 및 새로이 형성된 보호구의 확대지정으로 2000년까지 최소 810개소 확보
  - 각 시·도별 매년 2~3개소 확대 지정
- 제3차 야생조수보호 기본계획에 의거 서식환경개선사업 추진
- 조수의 인공증식·방사
  - 야생조수 인공증식·방사로 자연생태계 균형유지 및 수렵조수 확보
- 야생조수 진료센터 운영
  - 지역별로 설치된 265개소의 진료센터의 적정운영으로 부상당한 조수를 신속하게 운반치료
- 유해조수구제
  - 구제제도의 사전홍보로 관련민원 일소 및 농림어업의 피해 최소화

- 수렵장 운영
  - 수렵장의 운영으로 야생조수 적정밀도 유지 및 농림어업의 보호
    - 기 간 : 11. 1~2. 28(4개월간)
    - 수렵장
      - ┌ 순환수렵장 : 2개도씩 순환실시(제주제외)
      - └ 고정수렵장 : 제주, 거제(강원도 1개소 시설중)
  -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시범수렵장(사육장)은 순종멧돼지 사육기술 개발 및 종돈보급장 위주로 운영
- 조수보호의 국제화
  - 한·러 철새보호협정 이행철저
    - 철새이동경로 조사
    - 철새서식분포 조사
  - CITES협약 준수
    - 국제적 차원의 야생조수 멸종방지와 공동연구 사업 추진
  - RAMSAR협약 가입 및 한·일, 한·중 철새보호협정 체결추진
- 야생조수 불법포획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조수보호원 및 산림공익근무요원의 단속요원화로 밀렵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 강화
    - 산림공익근무요원(약 12,000명) 단속요원화
  - 불법포획 등 위법행위자 단속강화
  - 보호단속요원에 대한 교육강화로 자질향상
-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 전통과 보존가치가 있는 천연림 및 고령수목 등을 발굴하여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로 지정확대
  - 지정된 보호수중 수간이 부패되었거나 구멍등이 생겼을 경우 외과수술 실시
  -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를 소개하는 자료집(보호수지)를 발간하여 배부 및 홍보활동 전개
    - 보호수지 제작 : 1,000부(산림청)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계	예산액(일반회계)				
			계	보 조	융자		
계		백만원 2,596	2,180	2,180	-	416	-
야생조수서식실태조사	27명	402	201	201	-	201	-
야생조수서식환경조성	4종	20	10	10	-	10	-
보호수의과수술	40본	60	30	30	-	30	-
철새조망시설	12,000m'	583	408	408	-	175	-
시범조수사육시설(국특)	2개소	1,531	1,531	1,531	-	-	-

※ 보조사업외에 수렵장수익금 등을 활용 조수보호사업 확대 실시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구청장 및 지방산림관리청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산림환경과(02-961-2384~5)
- 시·도 : 산림과, 산림관리과, 산림환경과, 녹지과
- 시·군·자치구 : 산림과, 녹지과, 공원녹지과
- 지방산림관리청 : 운영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조수보호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보조사업 신청물량을 감안 시·도별 사업대상자를 심사 선정
- 우선순위
  - 조수보호구의 개소수 및 면적을 많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
  - 야생조수실태조사 예산의 50%이상을 지방비로 확보하는 자치단체
  - 야생조수실태조사 결과 서식밀도가 높은 자치단체
-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3조, 동시행령 제2조에 의거 5년마다 조수보호기본계획 수립(산림청)
    - 제3차조수보호기본계획 : '96~2000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3조, 동시행령 제2조와 조수보호기본계획에 의거 사업계획수립(시·도지사 수립)
  - 현지여건을 기초로하는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고 천재지변 또는 정책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계획 변경
-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 지원

○기타사항

- 시·군 책임하에 야생조수서식 실태조사 및 서식환경조성은 임업연구원, 도 산림환경연구소의 협조로 시행하고, 보호수의과수술은 사단법인 한국수목연구회 또는 나무병원 등 전문기관의 협조 및 용역으로 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군 및 지방산림관리청에서 책임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나. 보고·기타

- 시·군 : 연1회 점검평가후 시·도에 보고
- 시·도, 지방산림관리청 : 연1회 점검평가후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 : 연1회 심사결과 개선조치사항을 농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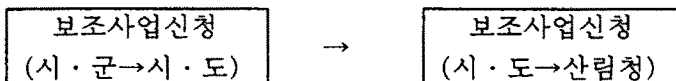
6. '98년도 사업신청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구 산림과(녹지과, 공원녹지과, 산림공원과)

나. 신청자격

- 조수보호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야생조수보호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시·도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국고보조금 신청서(지방비 확보내역 포함)

마. 기타사항

- 야생조수실태조사, 서식환경개선사업, 보호수의과수술 및 철새생태보호원 조성(철새조망시설)등 국고보조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98년 3월말 까지 산림청에 신청서(사업량, 단가, 사업비 및 단가산출내역 포함)를 제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지계획과 입니다.

## 1. 목 적

산촌지역의 풍부한 임산자원을 이용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여 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하고 산촌마을의 정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특색있는  
 임업촌락을 조성

## 2. 추진방향

- 지역주민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마을 조성
  - 주변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원개발과 주택정비, 편의시설, 상하수도등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산촌지역의 고유한 풍경과 전통문화 등을 계승·발전시킬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개발도모
- 정주권개발과 연계한 특색있는 「산림도시」로 발전도모
  - 중심마을 : 공동시설확충, 제재소등 목재가공시설 지원
  - 산촌마을 : 정주생활환경개선과 소득원개발사업등 지원
  - 주변산림 : 입도시설, 휴양림 조성, 간벌등 산림사업 촉진

## 3. 근거법령 : 산림법시행령 제22조의 3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50마을	1(4)	3(5)	5(10)	10(15)	131(116)	
사	계	337,609	2,240	7,118	12,080	12,520	303,651
업	보 조	174,793	2,240	4,238	6,480	6,920	156,931
	용 자	92,160		1,920	3,200	3,200	83,840
	지방비	68,640		960	2,400	2,400	62,880
비	자부담						

※ 사업량의 ( )내는 사전설계 마을수임.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1) 배 경

- 과거 국토종합개발은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및 광역개발정책등으로 국토 균형발전 도모
  - 과밀, 과소지역의 발생으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어 국토이용의 비효율화 초래
- 농어촌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등 정부시책에서도 산촌은 소외되고 있음
- 그러나 산촌지역은 그 자연적·입지적 특성상 주변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정비가 필연적 임
- 따라서 치산녹화 위주의 산림정책을 『산림과 산지,산촌』을 포괄하는 종합정책으로 전환하고
  - 산촌을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소득원을 개발하고 정주환경을 정비해 나감으로서 특색있는 임업촌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2) 지원대상자 : 산촌지역주민

##### (3) 지원단가 및 조건

- 마을조성 : 마을당 2,240백만원
  - 보 조 : 1,60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음 자 : 640백만원
    - 산촌소득원사업 : 금리 5%, 거치/상환(3/ 7)
    - 주 택 증·개축 : 금리 3%, 거치/상환(3/ 7)
    - 주 택 신 축 : 금리 5%, 거치/상환(5/15)
- 사전설계 : 마을당 88백만원(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부대비 포함)

##### (4) 지원시설의 종류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세 부 사 업 내 용	사업비
소득기반조성	마을회관, 공동저장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밀원단지조성, 산촌휴양시설등	1,000
주거환경정비	소하천정비, 절개지복구, 진입로개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등	600
소득원 사업	향토수종 및 관상수 생산, 야생화원 조성, 산채생산, 특용작물생산, 임간방목장, 저온저장고 및 건조장등	315
주 택 개 량	주택 증·개축, 주택신축	325

(5) 사업내용

- 산림사업 : 주위 산림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 실시
    - 조림, 육림, 간벌, 임도시설 등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집중투자
    - 목재집하장, 제재소 등 목재가공시설 설치로 임업소득원 확보 및 임업 경영촉진
    - 산림사업 실행에 필요한 임업기능인력 확보 및 양성
  - 산촌소득원 개발 : 목재 등 임산물을 원료로 한 소득원 개발
    - 목기, 죽세공, 목조각 등 목재가공품
    - 버섯, 산채, 분재, 야생화, 산지과수, 관상수재배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과 가축(혹염소, 토종닭)사육
    - 농림축산물의 공동저장·판매 및 이용·가공시설 등
  - 산촌휴양지 조성 : 도시 휴양수요를 산촌소득원으로 연계
    - 자연휴양림, 숲속교실, 산림욕장 등
    - 계절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이용자 계층을 유도하고 휴양객은 민박 시설에 유치되도록 계획
  - 정주기반 조성 : 쾌적한 주거환경기반 조성
    - 주택개량, 증축 또는 신축
    - 상하수도·오폐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마을안길 등 기반조성사업
    -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 문화복지 시설과 마을환경림(가로수 등) 조성
  - 기 타
    - 역사문화·환경보전 및 지역이미지 부각
    - 생태계 개념을 도입한 자연친화적 개발로 자연의 과도한 변화를 줄이고 가능한 보전을 원칙으로 개발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산촌마을 실현
- ※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등은 마을여건, 주민의견 등에 따라 결정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마을)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5(10)	12,080	9,680	6,480	3,200	2,400	-
마을조성	5	11,200	8,800	5,600	3,200	2,400	-
설 계	10	880	880	880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경영국 산지계획과 ☎ 02) 961 - 2337
- 도 : 농정국 산림과
- 시·군 : 산림과 (녹지과)

다. 대상지 선정

(1) 선정기준

- 마을규모는 30~50호 정도의 산촌마을로서 주민의 참여도가 높으며, 마을에 개발주체(사람)이 있고, 개발능력이 있는 지역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자연휴양림이 조성되어 있거나 연계조성이 가능한 지역
- 산별시범사업단지 권역내 마을로 산림·산지·산촌을 종합적으로 이용한 지역산림경제권 형성이 가능한 마을
- 협업체 또는 영림단이 조직되어 있어 산림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마을
- 산림사업 뿐만 아니라 농림부, 내무부등 타부처 관련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
- 산촌개발후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사업의 파급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선정

(2) 우선순위

- 자연휴양림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거나 “산” 별 시범사업단지 권역내 산촌마을
- 협업체 또는 영림단이 조직되어 산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
- 도 또는 군개발계획등이 수립되어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지방비 부담 능력이 있는 시·군으로서 개발의욕이 높은 마을

(3) 선정절차

- 지침시달 → 현지조사 및 대상지 선정 → 대상지확정 → 보 고  
(산림청) (시·군) (도) (도→산림청)

## 라. 사업시행

###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농산촌개발이나 산림개발 사업 등에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
- 사업대상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개발수요등 주민의견 수렴
  - 중장기개발계획등 기존계획과 관련 상하위 법규를 검토하고 개발수요와 지역여건등 분석
- 우리청소관 예산사업(마을환경사방, 임산물유통시설, 임도등)은 물론 타부처 소관 사업이 상호연계하여 종합지원되도록 추진
  - 도입시설의 종류와 배치계획, 토지이용계획등은 지방비와 주민 자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계획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서(안)에 대해 자문교수 자문, 지역주민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도지사에게 승인요청
  - 기본계획서에는 기본계획의 개요(개발목표·방향, 지역현황등), 주요 시설계획, 투융자계획(연차별·소관별·재원별)등이 포함되어야 함.
-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
-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계획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변경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 다른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변경
  - 지형사정으로 인한 근소한 위치 변경,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경등

#### (나) 기본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 도시계획등 다른부문의 개발계획등과 조화롭게 수립하여야 함.
- 법적제약등으로 시행 불가능한 사업 또는 투자가 과도한 대형사업등으로 인한 과대사업비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
- 주민 개개인의 이기적인 개발수요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 협의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과잉기대를 사전방지
- 철저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 개발마을과 주변마을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수립

- 주택개량,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타부처소관 연관사업은 농림부 소관 통합실시요령 등 해당부처의 단위사업과 같은 지원기준 적용
- 토지매입비(마을공동회관 부지 등)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을 지양하고 지방비 또는 자부담을 확보 추진

(다) 실시설계

- 기본계획을 토대로 마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설계
- 시장·군수가 직접설계하거나 농어촌개발 또는 산림개발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수립
- 실시설계의 수립·변경절차도 기본계획절차와 같음.

(라) 마을조성

- 시장·군수가 직접시행하거나 농어촌개발 또는 산림개발사업에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업시행
- 기본계획에 의해 당해연도 투자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등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
- 국토이용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용지매수, 보상 및 재산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공사감리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전문업체에 위탁(관계 공무원을 공사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 하여 시행

(2) 사업비 지원방법

- 마을단위로 정액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은 별도재원(지방비, 자부담 또는 타부처 소관 투융자)을 마련하여 추진
-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도비 또는 시·군비) 30%는 반드시 확보하여 해당사업에 투자되어야 함.
- 융자사업은 “농특회계 융자지침”에 의함.

(3) 기타사항

- 농어촌생활환경정비구역 지정
  - 산촌개발사업지를 농어촌정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여건 조성
  - 다른 법률의 의제, 배제로 제한사항 해소 및 부담금 면제

- 예산신청
  -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예산이 신청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기타 내무부, 환경부사업등도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협조하여 예산신청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계획수립과 실행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관계전문가, 임업관련기관·단체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산촌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도, 시·군에서는 농림·내무·건설·산림과장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부서간 협조체제 구축
- 자문교수 위촉
  - 지역대학교수를 분야별(산림, 지역계획, 건축·주택, 농가소득등) 자문교수로 위촉하여 현지조사·설계 등에 자문
- 현장보존 관리
  - 시장·군수는 공사시행 과정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전후의 현장사진 등을 촬영·보관 및 제출

##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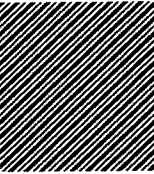
###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대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그 종물
-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의 교부목적이 달성될때 까지
- 사후관리 기준
  - 사후관리 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처분을 제한하며 장부를 비치하여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4조2항, 제35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

### 나. 보고

- 기본계획 계약체결 상황보고 : 계약체결후 7일 이내(계약서사본 첨부)
- 기본계획완료 승인 보고 : 승인즉시
- 사업착수 보고 : 즉시
-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종결후
-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V. 산 림 자 원 조 성



여 백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국제협력과입니다.

## 1. 목 적

장기·안정적인 목재공급원 확보로 국내 목재산업보호·육성

## 2. 추진방향

- 2040년까지 70만ha의 해외조림지 조성 목표
- 해외조림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
- 투자유망국가와 교류협력 강화

## 3. 근거법령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허가)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83조의3(신고)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ha)	87,675	5,675	6,000	8,000	8,000	60,000
사 업 비	계	85,655	3,930	10,580	7,488	56,169
	보 조	-	-	-	-	-
	용 자	53,885	2,006	3,014	4,305	39,318
	지방비 자부담	31,770	1,924	7,566	3,183	16,851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업시행주체 : 해외조림업체
- 지원 대상 : 해외조림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 지원규모 및 조건
  - 재 원 : 산림개발기금
  - 지원비율 : 사업비의 70%이내
  - 지원내용 : 해외조림에 필요한 사업비
  - 용자조건

사업별	금리	용자기간(년)				용자한도	용자비율
		구분	계	거치	상환		
해외조림	연3%	속성수	동남아 10, 대양주, 남미15	7 10	3 5	없음	조림사업비의 70%이내
		장기수	25	15	10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백만원)

내 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산림개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해외조림	ha 8,000	7,488	4,305	-	4,305	-	3,183



##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산림청

- 대상자 선정 : 산림청 국제협력과
- 융자지원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국제협력과(02-961-2344)
  - 해외조림등 해외산림개발실적,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업체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융자비율 및 융자금액 결정
- 한국해외산림개발협회(02-733-3453)
  - 업체별 융자신청서를 취합, 산림청에 제출
-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부 (02-416-9421)
  - 융자금 대출 및 사후관리

다. 자금지원예정자

- 해외자원개발사업법(해외조림)에 의하여 산림청에 허가 및 신고를 득한업체

##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산림청,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사후관리 [ 산림청 : 해외조림실적 확인  
임업협동조합중앙회 : 대출금 사후관리

나. 보고사항

- 사업추진 실적보고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한국해외산림개발협회

나. 신청자격

(1) 선정기준

-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연도 조림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연도 사업을 확인받은 자

(2) 우선순위 : 없음

다. 신청절차

○ 선정권자 : 산림청장

○ 선정절차 : 해외조림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신청 → 심사 → 융자금

결정금액을 민원인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

※ 사업계획 심사 : 조림예정지 정리, 양묘, 식재, 사후관리등 작업단계별 타당성 및 적정비용을 검토

라. 구비서류

○ 해외조림비 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98 사업계획 확인서 1부(조림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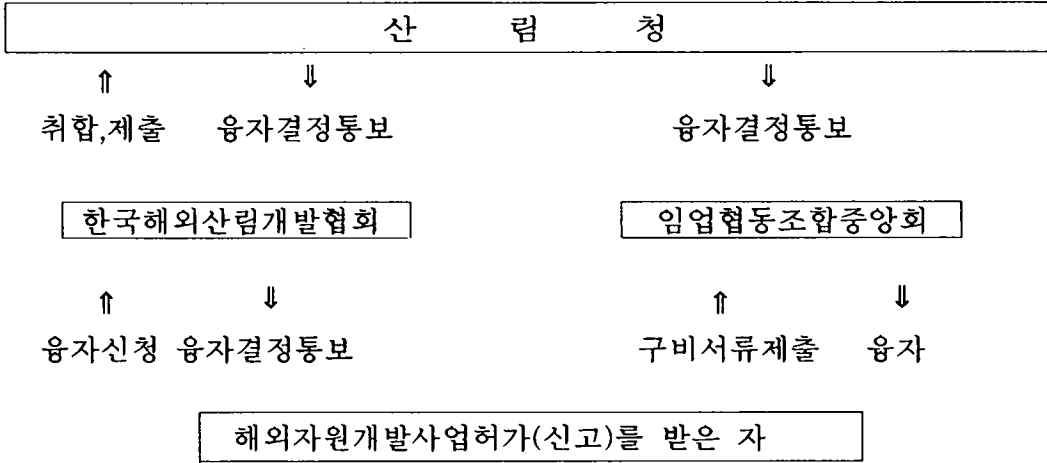
○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부(산출관련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2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조림대상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당해연도 사업을 확인받은 자

○ 선정절차



바. 기타 참고사항 : 산림개발기금 응자지침 참조

## 해외조림비 용자신청서

(사업명:      지역 해외조림사업)

신청내역

(1)사업소재지		(2) 조림수종	(3) 조림면적 (ha)	(4) 조림단비 (\$/ha)	(5)총조림비(천\$)			
국 가	지 역				계	용자	자부담	기타

199 . . . . .

신청인

주소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가. 1997 사업계획확인서 1부

(진출국주재 한국공관이나 진출국의 공공기관 확인)

나. 소요자금산출내역서(서식2) 1부

**산림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1. 사업개요

수종	면적	본수	총조림비	사업기간	비고
	ha	본	US\$		

2. 사업비 산출내역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현지통화	US\$		
계				
(1)예정지정리 -인건비 -장비사용료 -기타				
(2)식재 -인건비 -장비사용료 -기타				
(3)조림지관리 -인건비 ·시비 ·병해충관리 ·풀베기 ·기타				
(4)자재대 -묘목 -비료 -약재 -기타				
(5)기타비용				

※ 적용환율 : US\$ =      원

3. 사업단비(ha당)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현지통화	US\$		
계				
(1)예정지정리 -인건비 -장비사용료 -기타				
(2)식재 -인건비 -장비사용료 -기타				
(3)조림지관리 -인건비 ·시비 ·병해충관리 ·풀베기 ·기타				
(4)자재대 -묘목 -비료 -약재 -기타				
(5)기타비용				

133 -1	산 립 조 성(공공) (조림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자원조성과입니다.

### 1. 목      적

피해림과 불량림에 대한 지속적인 갱신 조림으로 인공림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조림을 실행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자급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토록하여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 2. 추진방향

- 산림의 경영목적과 입지여건에 따라 다양한 조림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산림 투자의 효율성 증대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 조성
-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지역 또는 권역단위별로 집중 투자
- 불량림과 피해임지의 지속적인 수종갱신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큰나무 조림을 병행함으로써 국토경관 조성 및 도시·공단주변 내공해 환경림 조성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사업량: ha, 사업비: 백만원)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사   업   량		280,200	105,000	19,700	16,000	19,800	119,700
사 업 비	계	722,783	177,164	59,631	55,716	61,268	369,004
	보   조	365,485	76,436	30,726	34,950	32,917	190,456
	기금용자	32,165	7,816	2,485	2,733	2,733	16,398
	지 방 비	233,323	50,398	20,870	14,261	19,926	127,868
	자 부 담	91,810	42,514	5,550	3,772	5,692	34,282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및 설명

##### (1) 배 경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경제적으로 가치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 육성

##### (2) 지원대상자

- 보조사업 : 조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산주
- 용자사업 : 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신청자 (산주)

##### (3) 지원단가 및 조건

##### (가) 보조사업

- 지원단가 ('97국고보조)

사 업 별	ha당		
	사 업 비 (원)	지 원 액 (원)	%
○ 경제수조림			
- 일반지역	2,694,624	1,886,237	70
- 파종조림	2,614,110	2,352,699	90
- 용기묘조림	650,579	585,521	90
○ 큰나무조림			
- 일반지역	7,954,500	3,977,250	50
- 산불피해복구	10,429,000	7,300,300	70

※ 유휴토지의 산림전환에 대하여도 사업별 지원단가에 따라 보조지원

- 지원조건 : 당해연도 조림대상지

##### (나) 용자사업

- 지원단가

- 총용자규모 : 2,733백만원
- 지원단가
  - 자력사업 : 사업 단비를 기준으로 100%까지 용자
  - 보조사업 : 산주 자부담액의 100%까지 용자



○ 용자지원조건

구 분	금 리	용 자 기 간		
		계	거 치	상 환
경 제 수	년 3%	35년	20년	15년
기 타	"	15	10	5

(4) 지원시설의 종류 :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5) 사업내용

(가) 경제수조림

- 목 적 : 병해충임지, 산불피해지, 벌채적지 및 불량림에 대한 갱신대상지에 목재생산을 위한 장기성 수종의 묘목을 식재하여 산림자원 조성
- 방 법 : ha당 2,000본~5,000본
- 식재묘목의 규격 : 1~4년생
- 수 종 : 강송, 잣나무, 전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해송, 리기테다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버지니아소나무, 참나무류, 자작나무류, 물푸레나무, 느티나무 등 산주 희망수종

(나) 큰나무조림

- 목 적 : 도시·공단 및 주요도로변 등 공익성이 높아 단기간내 경관조성이 필요한 임지를 대상으로 공해에 강한 수종과 지역별향토특색수종을 큰나무로 식재하여 조기녹화와 산림자원 조성
- 방 법 : ha당 1,500본 식재
- 식재묘목의 규격 : 7년생 내외
- 수 종 : 편백, 화백, 독일가문비, 해송, 은행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등

(다) 방화수림대 조성

- 목 적 : 산불에 강한 내화수종을 산불위험지역에 식재하여 산불의 연소 확대 방지 및 방화선 구축 토대 마련
- 방 법
  - 조림지중 산불발생시 확산방지와 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능선하단부나 자연조건에 의해 방화효과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
  - 5ha 이상 조림지를 대상으로 띠모양으로 식재
  - 복층림 시업방법 이용시는 상층목을 강도간벌후 실시
- 수종 : 상수리, 굴참나무등 참나무류, 고로쇠나무, 낙엽송 등

(라) 산불피해지 복구

- 목 적 : 자연적·인위적 방법을 병행하여 피해이전의 식생으로 복구
- 방 법
  - 인위적인 복구와 자연복구를 조화롭게 병행 실시
  - 소생가능지·암석제지는 자연복구 보육하고 임목고사지중 조림가능지는 가급적 피해이전 수종으로 조림
  - 토심이 얇고 토양소실이 심한 지역은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산불 발생 2~3년후 조림 실행 (특수대표조림은 이듬해에 조림 추진 가능)
  - ※ 대면적 산불피해지는 복구심의위원회의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 수립 추진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용자:기금, 보조:일반)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6,000	55,716	37,683	34,950	2,733	14,261	3,772
○ 경제수조림	14,300	41,698	30,257	27,524	2,733	7,669	3,772
○ 큰나무조림	1,700	14,018	7,426	7,426	-	6,592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용자금은 산림개발기금임.

※ 용자조건

- 경제수 : 연리 3%, 20년거치 15년 상환
- 기 타 : 연리 3%, 10년거치 5년 상환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1) 산림청 :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02-961-2354~5)
- (2) 시·도 : 도시계획(환경녹지,농정,산림,산업경제)국 녹지(산림,자원조성)과
- (3) 시·군 : 녹지(산림)과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조림예정지 선정

- 영림계획상 조림예정지
- 5대강유역 수원함양산림 종합관리대상지
- 임업진흥촉진지역
- 산불피해지와 병해충피해지중 조림복구가 필요한 대상지
- 한계농지·유휴지로서 산림으로 전환할 대상지 최대한 선정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산림전환대상지 선정을 위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상지 선정)
- 기타 불량림으로서 수종갱신이 시급한 지역
- 주요도로변, 철도변, 사적지, 관광지 주변 등 공익성이 높아 단기간내 경관조성이 필요한 임지

※예정지 선정이 완료되면 시장·군수는 필히 산주에게 직접 사업실행토록  
통보

○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 지역완결조림을 위해 주변의 불량림은 빠짐없이 정리하여 임상을 개량  
하되 우량목은 존치
- 제거된 조림지장물은 식재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횡

으로 줄을 맞추어 정리

- 임외지역이라도 유휴토지 등 조림이 필요한 경우 조림권장 및 정리작업 실시

※ 시장·군수는 대행작업시 산주에게 정리작업 착수일자를 통보하여 산주가 작업에 입회토록 조치

#### ○ 조림수종

- 적지적수가 되도록 수종 선정
- 도별 묘목수급계획량 범위내에서 산주 희망수종 우선적으로 반영
- 산주 희망수종이 없을 때 산주가 구입 식재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 큰나무조림중 환경조림은 공해에 강하거나 미관이 수려한 향토수종 선정
- 유휴토지에는 유실수, 관상수, 특용수, 다년생 자생식물 등 단기소득 수종  
· 도로변, 하천주변 유휴지에 단기소득수종 식재 권장  
· 한계농지 등 유휴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법에 의한 유실수 기타 다년생 식용 또는 약용수목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식재 권장

#### ○ 조림방법

- 조림대상지별로 예산범위내에서 조림설계를하여 실행
- 조림방법의 다양화 : 나무아래조림 (수하식재), 섞어심기(혼합조림) 등
- 식재본수(ha당)는 경영목적, 수종, 지리, 입지, 묘목의 크기, 경제성 등에 따라 수급계획량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실행  
· 경제수조림 : 2,000~5,000본 (기준본수 3,000본)  
· 큰나무조림 : 1,500본

#### ○ 묘목·비료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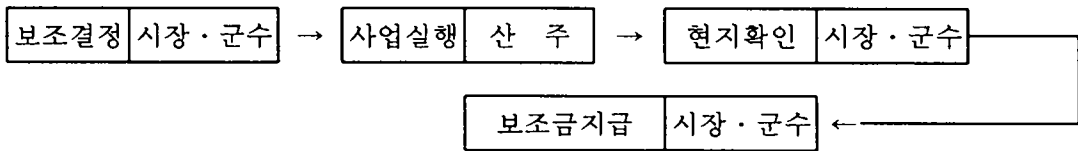
- 조림설계에 따라 묘목·비료를 수급
- 묘목은 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라 신속·정확히 검사하고 불량묘가 수급되지 않도록 검수에 철저(식재후 풀베기작업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활엽수 묘목은 백색페인트로 줄기에 표시한 후 검수)
- 지방비·자력 조림에 필요한 묘목은 반드시 수급계획에 반영
- 장거리 운반으로 묘목이 건조·부패되지 않도록 신속 운반 가식하고 특히 분묘는 분이 깨어지지 않도록 주의

○ 식재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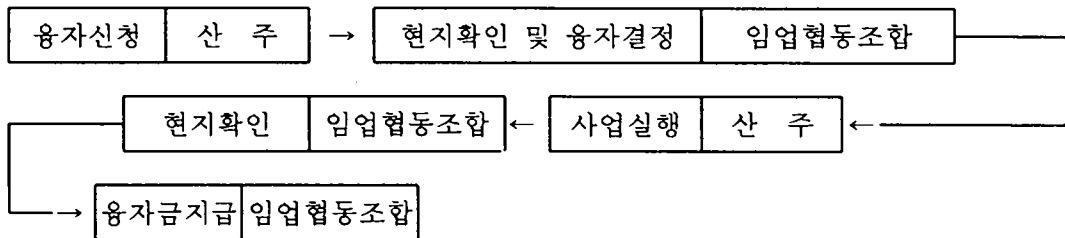
- 식재열(줄)에 구애받지 말고 적정 식재거리를 유지하여 최대한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실행
  - 유희토지에 식재시는 마대 등으로 멀칭을 하여 풀베기작업비 절감
  - 경계수조립은 작업시 비료주기(본당 2개) 병행 실시  
 ※묘목뿌리에 너무 가까이 주지 않도록 유의
  - 조림지별로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식재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완료후 최종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묘목·비료가 유실되거나 폐기사례가 없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대행조림작업지에 대하여 식재작업이 완료되면 산주에게 작업 결과를 통보하여 산주가 작업실행내용을 확인토록 조치

(2)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사업



○ 용자사업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주 체 : 산림소유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 (2) 사후관리방법

- 검목실시

구 분	점 검 자	점검대상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1차 검목	시장·군수	당년조림지	조림당년도 6~7월	조림목에 대한 활착상황 (활착율)
2차 검목	시·도지사	조림후 3~5 년된 조림지	8~9월	식재본수에 대한 현존 본수, 생육상황, 사후 관리상황

- 조림사업 실행상황을 “조림지 사후관리대장”에 기록유지
- 현지도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3) 결과반영

- 활착율 80%미만 조림지중 집단적으로 실패한 지역은 익년도 보식
- 조림사업 시책에 반영

나. 보고·기타

- o 조림실적 보고 : 춘기조림 완료후
- o 조림 활착상황 보고 : 8.31
- o 검목실적 보고 : 9.15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1) 보조사업 : 공공사업으로 신청불요
- (2) 융자사업 : 시·군 임업협동조합

나. 신청자격

- (1) 보조사업 : 공공사업으로 신청불요
- (2) 융자사업
  - o 영림계획상 조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o 조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o 자력으로 조림사업을 희망하는자

다. 신청절차

- (1) 보조사업 : 공공사업으로 불요
- (2) 융자사업 : 조림희망자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융자사업) : 산림개발기금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융자사업)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다음 조림대상지의 조림희망자

- 미립목지(나무가 없는 산림)
- 산불 및 병해충 피해지
- 수종갱신 대상지
- 벌채한 산림

○ 우선순위 : 다음 순위에 의거 지원

- ① 미립목지(나무가 없는산림)
- ② 산불 및 병해충피해지
- ③ 수종갱신대상지

(2) 선정절차

- 영림계획서와 시업명령 사항 및 자력조림 희망사항을 검토
- 보조사업은 시장·군수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
- 융자사업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

【별지 제1호서식】

### 산림개발기금융자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소재지
				계	용자	자담	보조	

199 . . . . .

○ 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화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가. 소유권확인서

1부

나.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 ○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133 -2	산림조성 (공공) (육림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자원조성과입니다.

## 1. 목 적

조림목 피압방지와 임목생장촉진 및 형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임지별 적절한 육림사업을 적기 실행함으로써 우량용재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

## 2. 추진방향

- 체계적인 육림관리로 임목의 생장을 촉진하고 형질을 향상시켜 경제적·환경적 기능이 높은 자원으로 육성
  - 인공림은 조림후 벌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기에 육림을 실행하여 우량용재림으로 유도
  - 천연림은 이용가치가 있는 밀생활엽수림을 중심으로 천연림보육사업을 실행하여 우량임분으로 육성
- 생산임지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집중지원하고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적기에 육림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검목제도의 운영으로 조림지의 활착상황을 조사하여 활착율 80%미만 지역중 필요한 지역은 보완조림 실시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ha, 백만원)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2,482,960	630,560	164,700	168,700	217,000	1,302,000
사업비	계	1,145,335	215,094	76,258	82,219	110,252	661,512
	보조	410,650	64,046	23,721	30,549	41,762	250,572
	기금용자	66,156	14,093	5,287	5,847	5,847	35,082
	지방비	405,418	60,114	22,421	30,548	41,762	250,572
	자부담	263,111	76,841	24,829	15,275	20,881	125,286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및 설명

##### (1) 배 경

인공조림지 및 천연림에 육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보속생산이 가능한 임분구조 조성

##### (2) 지원대상자

- 보조사업 : 육림사업을 희망하는 산주
- 융자사업 : 육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신청자 (산주)

##### (3) 지원단가 및 조건

###### (가) 보조사업

- 지원단가 ('97국고보조)

(사업량 : ha)

사 업 별	ha당		
	사업비 (원)	지원액 (원)	%
○ 풀 베 기	332,077	132,830.8	40
○ 어린나무가꾸기	878,739	351,495.6	40
○ 덩굴제거	-	-	-
- 1차 작업	310,687	124,274.8	40
- 2차 작업	103,991	41,596.4	40
○ 천연림보육	898,012	359,204.8	40

- 지원조건 : 당해연도 육림대상지

###### (나) 융자사업

- 지원단가

- 총융자규모 : 5,847백만원

- 지원단가

- 자력사업 : 용자사업비를 기준으로 100%까지 용자
- 보조사업 : 산주 자부담액의 100%까지 용자

o 용자지원조건

구 분	금 리	용 자 기 간		
		계	거 치	상 환
장기수육림	년 3%	35년	20년	15년

(4) 지원시설의 종류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5) 사업내용

(가) 풀 베 기

- o 목 적 : 대상지별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 수립하여 식재한 묘목이 피압되지 않도록 조림목 주위의 잡초나 관목을 베어주어 조림목의 정상적 성장 촉진
- o 시 기 : 6~8월 사이에 년 1~2회 실행
  - 잡초와 관목이 적은 임지는 년 1회
  - 잡관목이 무성한 임지는 년 2회
- o 기 간 : 조림후 3~5년간
  - 잣나무등 어릴 때 생장이 느린 수종 : 5년간
  - 기타 장기수 : 3년간
- o 방 법 : 수종이나 입지조건에 따라 모두베기, 둘러베기도 하나 주로 줄베기로 실행
  - 줄 베 기 : 식재된 묘목을 중심으로 하여 90~100cm 폭으로 식재열에 따라 풀이나 잡관목 제거
  - 모두베기 : 조림목 이외의 풀이나 잡관목을 제거
  - 둘러베기 : 식재된 묘목을 중심으로 반경 50cm정도내의 풀이나 잡관목 제거

(나) 어린나무가꾸기

- 목 적 : 대상지를 면밀히 선정하여 조림목이 잡관목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하여 성장촉진으로 조림성공 유도
- 대상임분 : 조림후 5~10년되는 임지
- 제거대상목
  - 조림목 생장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과 덩굴
  - 피해목
  - 생장이 불량한 도태대상목, 낙엽송은 열세목
- 작업시기 : 6~9월 사이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
- 방 법 : 제거대상목이나 조림목을 감고 올라가는 덩굴류 제거

(다) 덩굴제거

- 목 적 : 임목에 피해를 주는 덩굴류를 제거하여 임목고사 방지와 성장 촉진 및 형질향상
- 대상지 : 칩덩굴이 임목에 피해를 주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임지
- 시 기 : 2~11월
  - 근사미에 의한 제거작업 : 4~8월
  - 디캄바(반벨)에 의한 제거작업 : 2~3월, 10~11월
- 방 법
  - 칩뿌리채취기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제거하거나 칩뿌리 부근에 근사미 약제를 주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반벨액제를 사용할 겨우는 약제처리시 농약이 지면에 떨어져 약해(수목피해, 농작물피해, 수질 오염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칩고살 약제 주입기 활용으로 작업의 생력화 도모

(라) 천연림보육

○ 목 적 : 예정지 선정이 용이한 1~2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우량한 천연림은 수종갱신대상에서 제외하여 알맞는 보육작업을 실행 용재림으로 유도함으로서 생태적 임업경영과 아울러 투자의 효율을 높임

○ 대 상 지

- 치수림보육대상지 : 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천연임분
- 유령림보육대상지 : 평균 수고 4~12m정도로서 상층임목간의 우열이 현저하게 나타난 임분으로 상층임관이 밀폐되어 수관경쟁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임분
- 위와 같은 대상지로 최소한 10년 이내에 주벌수확 대상이 안되는 임분

○ 작업시기 : 2~11월

○ 방 법

- 형질이 좋은 미래목을 ha당 400본 내외를 선정하여 미래목에 대한 가지 치기와 방해목을 제거 (임목생장에 관계없는 임내정리작업은 지양)
- 제거대상 : 미래목과의 경합목, 폭목, 피해목, 형질불량목, 고사목, 덩굴류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ha,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융자:기금,보조:일반)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168,700	82,219	36,396	30,549	5,847	30,548	15,275
○ 풀 베 기	82,000	27,230	10,892	10,892	-	10,892	5,446
○ 어린나무가꾸기	33,000	34,845	17,446	11,599	5,847	11,599	5,800
○ 덩굴제거	40,700	8,470	3,388	3,388	-	3,388	1,694
- 1차 작업	20,500	6,369	2,548	2,548	-	2,548	1,274
- 2차 작업	20,200	2,101	840	840	-	840	420
○ 천연림보육	13,000	11,674	4,670	4,670	-	4,670	2,335

※ 융자조건 : 연리 3%, 20년거치 15년 상환, 융자금은 산림개발기금임.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1) 농림부(산림청) :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
- (2) 시·도 : 도시계획(환경녹지,농정,산림,산업경제)국 녹지(산림,자원조성)과
- (3) 시·군 : 녹지(산림)과

다. 신 청

- (1) 보조사업 : 공공사업으로 신청 불요
- (2) 용자사업
  - 신청자격
    -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자력으로 육림사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절차 : 육림사업 희망자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 산림개발기금용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라. 대상자 선정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우선순위 : 다음 순위에 의거 지원
    -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2) 선정절차

- 영림계획서와 사업명령 사항 및 자력육림 희망사항을 검토
- 보조사업은 시장·군수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
- 융자사업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

## 마. 사업시행

###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 ○ 풀베기사업

##### - 조림지별 사업기준

- 잣나무, 전나무소묘(2-1,2-2묘) : 식재당년을 포함 5년간 실시
- 대묘기타수종조림지 : 식재당년을 포함 3년간 실시
- ※년1회 실시함을 기준으로 하되 조림목 피압이 심한 곳은 2회 실행

##### - 줄베기를 원칙으로 실행하되 리기테다등 동해피해가 우려되는 임지는 들레베기로 실행하여 조림목을 보호

##### - 작업시기

- 년1회작업지 : 늦어도 7월말까지 실행
- 년2회작업지 : 1차(6월), 2차(8월)

#### ○ 어린나무가꾸기

##### - 대상지는 장기수 인공조림지로서 풀베기작업 완료후 간벌 이전에 잠관목 등이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어 이의 제거작업이 요구되는 임지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 반복 실시

- 사업량은 장기수와 큰나무조림지중 식재후 5~10년되는 임지를 대상으로하여 2회 실행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회수에 구애받지 말고 임지여건에 따라 조림목 피압이 예상되는 임지는 반복 실행

##### - 특히 임내정리방식 작업을 지양하고 조림목의 생육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하층목은 작업비 절감과 임지보호를 위해 잔존시키거나 무릅높이로 베어 맹아(움) 발생을 억제시킴

## ○ 덩굴제거

- 1차 제거후 다음연도에 보완 제거하여 칩덩굴에 의한 임목과 조림목의 피해 근절
- 방법은 근사미 약제주입 및 디캄바(반벨) 액제 도포방법으로 제거
- 작업시기는 2~11월에 실시하되(약종별 제거적기에 유의하여 실행) 효과를 확인하고 재생·누락 또는 지근이 제거되지 않아 덩굴이 다시 생육하고 있는 임지는 풀베기 작업시에 인력으로 제거하고, 특히 보완작업 지는 완전 제거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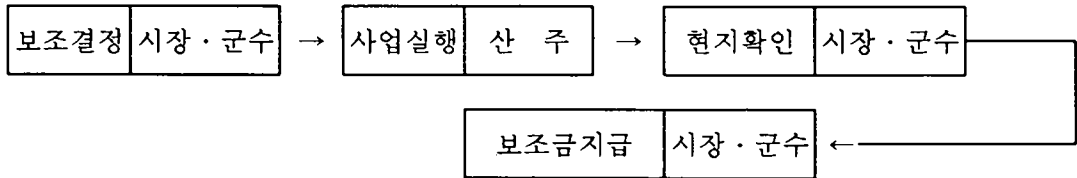
## ○ 천연림보육

- 영림계획서에 계획된 임지와 기타 연도별 계획에 반영된 임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실행계획지를 식별하기가 쉬운 이른봄(2-4월)에 전개소 현지확인조사를 실행하여 예정지를 선정하고 산주에게 시업 통보
- 산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가급적 사업실행후 10년 이내에 주벌 수확을 하지 않을 임지를 대상지로 확정
  - 영림계획상 주벌대상지는 천연림보육 대상지에서 제외
- 대상지는 용재림으로 육성가치가 높은 밀생임분으로 하되, 침엽수임지(특히,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만연지역 제외)보다는 우량활엽수 임지를 우선적으로 선정
- 미래목은 최종수확기까지 잔존 보육시켜야 하므로 형질우량목을 평균 5m이상 간격으로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ha당 400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흉고의 평균직경 10cm미만인 임분의 경우는 미래목의 선정 및 표식을 생략할 수 있음
- 군별로 현지실연교육을 실시하고 도별로 지역조건에 알맞는 보육기술을 개발하여 발전적으로 추진
- 시·군별 사업량은 임상상태를 감안하여 배정(대상지가 많은 지역은 많게 적은 지역은 적게 배정)
  - ※시장·군수는 산주에게 사업실행지 선정, 작업착수, 작업완료시를 포함 3회 이상 통보하여 산주가 작업에 입회하여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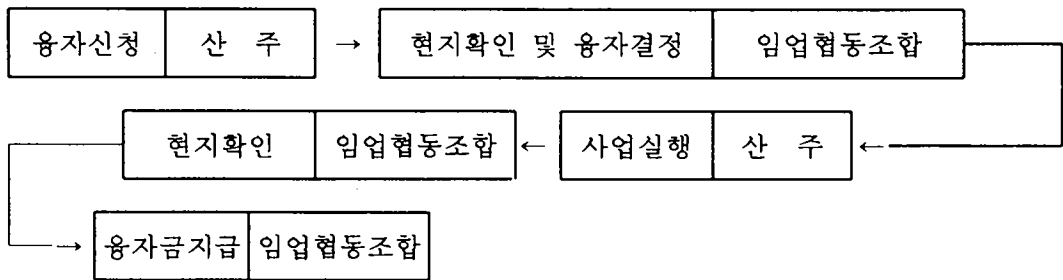


## (2) 사업비 지원방법

### ○ 보조사업



### ○ 용자사업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1) 주 체 : 산림소유자, 시·군(시·도) 및 산림청

(2) 사후관리방법

- 육림사업 실행상황을 “조림 및 사후관리대장”에 기록유지
- 현지도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강구

### 나. 보고·기타

○ 육림사업 실행결과 보고 (12월까지)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1) 보조사업 : 공공사업으로 신청불요
- (2) 융자사업 : 시·군 임업협동조합

### 나. 신청자격

- (1) 보조사업 : 공공사업으로 신청불요
- (2) 융자사업
  -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자력으로 육림사업을 희망하는자

### 다. 신청절차

- (1) 보조사업 : 공공사업으로 불요
- (2) 융자사업 : 육림사업 희망자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신청

라. 구비서류(융자사업) : 산림개발자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마. 대상자 선정(융자사업)

####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선정기준
  -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우선순위 : 다음 순위에 의거 지원
  - 영림계획상 육림계획이 책정된 산림소유자
  - 육림사업 시업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2) 선정절차

- 영림계획서와 시업명령 사항 및 자력육림 희망사항을 검토
- 보조사업은 시장·군수가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
- 융자사업은 시·군 임업협동조합장이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

【별지 제1호서식】

### 산림개발기금융자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소재지
				계	음자	자담	보조	

199 . . . . .

○ 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화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가. 소유권확인서

1부

나.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 ○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133 -3	산 립 조 성(공공) (간별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산림경영과입니다.

### 1. 목 적

나무가 뻗뻗하게 들어선 임분을 대상으로 솜아내기 작업을 실시하여 임목의 성장촉진과 건전한 임분육성으로 우량용재 생산을 위한 간별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

### 2. 추진방향

- 주요 “산” 별 또는 간별시험단지내 집중실행
-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단지화하여 집중실행
- 간별기술개발보급 및 제도개선으로 간별활성화

###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6조, 제8조 및 제73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ha)		395,665	47,197	23,670	25,000	35,000	264,798
사 업 비	계	282,059	23,617	15,626	18,804	26,196	197,816
	보 조	111,655	9,328	6,148	7,403	10,360	78,416
	기금융자	2,886	263	255	296	296	1,776
	지방비	111,660	9,333	6,148	7,403	10,360	78,416
	자부담	55,858	4,693	3,075	3,702	5,180	39,208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 배 경

치산녹화기에 조림한 나무들이 간벌적기에 도달하였으나, 간벌재의 수요가 없어 영세산주들은 간벌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쓸모있는 산림으로 기꾸기 위하여는 간벌사업이 시급함.

##### ○ 지원단가

- 보조사업 : ha당 740천원

[보조(국고+지방비) : 592천원, 자부담: 148천원]

※ 자부담 148천원/ha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사업할 수도 있음.

- 용자사업 : 사업비 전액용자(ha당 740천원)

※ 용자조건 : 연리 3%, 2년거치 1년상환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합계	예산액(용자:기금,보조:일반)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대출		
간벌사업	25,000	18,804	7,699	7,403	296	7,403	3,702

※ 용자금은 산림개발기금임.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산림청

나. 사업담당 부서

○ 산 립 청 : 산림경영국 산림경영과(02-961-24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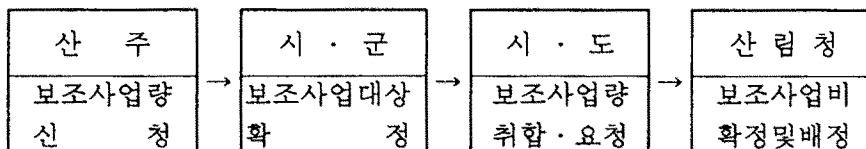
○ 시 · 도 : 산림과(녹지과)

○ 시·군·구 : 산림과(녹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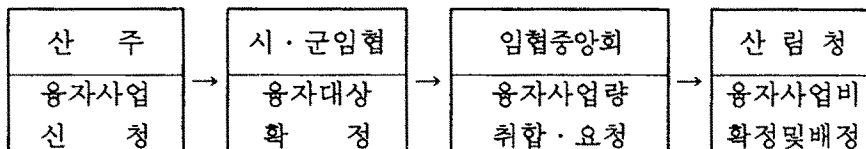
다. 대상자 선정

- 보조간별은 수익성이 기대되지 않는 간별대상지(구: 예비간별)로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선정기준 우선순위
  - ① 주요 “산” 별 간별대상 임지
  - ②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간별집단화 조성지역
  - ③ 영림계획이 수립된 임지
  - ④ 영세산주로서 간별이 시급한 임지
  - ⑤ 기타 간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산주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 ① 독립가
  - ② 임업후계자
  - ③ 영세산주
  - ④ 소재산주
  - ⑤ 간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산주등
- 선정절차

· 국고보조사업



· 용자사업



## 라. 사업시행

###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익년도에 간벌사업을 하고자 하는 산주는,
  - 영림계획 작성 임지에 대하여는 영림계획에 의한 사업신고를 하고,
  - 영림계획지 이외의 임지는 시장·군수의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사업 신청을 하면 시·군산림과에서는 취합·종합적인 사업계획 수립
    -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음.

### ○ 사업비 지원방법

- '97 보조간벌사업비중 80%를 보조(국고 40%, 지방비 40%)지원
  - ※ ha당 사업비 : 740천원(보조금 : 592천원, 자부담 : 148천원)
- 용자간벌사업비 : 간벌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 대출  
( '97 ha당 사업비는 740천원임)
- 보조간벌 사업비는 해당 시·군에서 관리
- 용자간벌 사업비는 해당 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관리

마. 간벌작업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임업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위탁 또는 대행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보조간벌사업 임지에 대하여는 시·군 산림과에서 간벌사업 지도·감독 실행
- 용자 간벌사업 임지는 시·군 임업협동조합 지도원들이 간벌사업 지도
- 간벌실행방법은 「사유림입목벌채실시요령」에 따라 사업실행

### 나. 보 고

- 시·군에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6조, 제27조에 의한 보조금신청 및 실적(정산)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가. 신청서 제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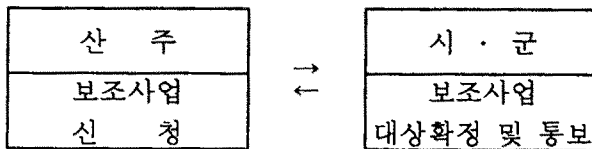
- 보조간별신청 : 시·군 산림과
- 용자간별신청 : 시·군 임업협동조합

### 나.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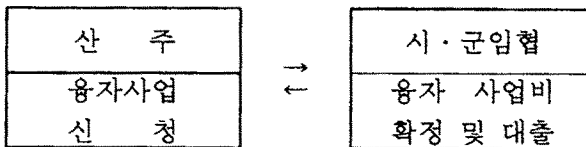
- 간별사업을 원하는 산주 또는 산림경영자

### 다. 신청절차

- 국고보조사업



- 용자사업



###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산림개발기금 용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5항<추진체계> “대상자 선정” 내용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 사 업 신 청 서

1. 사업명 : 간벌사업(보조사업)

2. 현 황

사업예정지 현 황	위 치	군. 면. 리. 번지
	소유자명	
	면 적	필지            ha (m <sup>2</sup> )
	영림계획 편성내용	
기 타 특 이 사 항		

3. 세부사업계획

구 분	계 획 면 적	단 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부담
산림소유자	m <sup>2</sup> (ha)						
산림경영자							
단 체 또는 회 사							

【별지 제2호서식】

## 산림개발기금융자신청서

사업명	세부사업명	단위	사업량	총 사업비 (천원)				사업소재지
				계	음자	자담	보조	

199 . . . . .

○ 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전화

성명(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첨부서류

가. 소유권확인서

1부

나. 차주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자금대출시) 각 1부.

○ ○ 임업협동조합장 귀하

133 -4	산림 조성(공공) (조립용 묘목생산)
-----------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자원조성과 입니다.

### 1. 목적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에게 필요한 양묘자금을 지원, 우량한 묘목을 책임 생산케함으로써 조립사업 성과거양

### 2. 추진방향

- 정부계획 조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묘목생산자중 자금사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융자지원

### 3. 근거법령

- 자금지원
  - 산림법 제10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의2
- 종·묘생산업의 등록
  - 산림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백만본)	708	164	64	60	60	360
사업비	계	133,802	38,548	10,910	10,543	63,258
	보조	-	-	-	-	-
	융자	80,283	23,129	6,546	6,326	37,956
	지방비 자부담	-	-	-	-	-
		53,519	15,419	4,364	4,217	25,302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설명

##### 1) 배경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조림계획에 소요되는 묘목의 효율적 생산

##### 2) 지원대상자

정부계획 조림용 묘목생산자(임업협동조합 및 한국양묘협회 회원)

##### 3) 지원단가 : 묘목생산비의 60%

##### 4) 지원조건 : 연리 5%, 3년거치 2년상환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내용별	사업량 (백만본)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60	10,543	6,326	-	6,326	-	4,217
조림용 묘목생산	60	10,543	6,326	-	6,326	-	4,217

\* 용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후 2년상환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시·도

- 산림청 : 지침시달, 자금배정
- 시·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임업협동조합 : 용자금 취급업무

#### 나. 사업담당 부서

- 산림청 : 자원조성국 자원조성과(02-961-2353~4)
- 시·도 : 도시계획(환경녹지,농정,산업경제)국·녹지(산림)과
- 시·군자치구 : 산림과(녹지과)

#### 다. 대상자 선정

##### ○ 선정기준

산림법 제45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종묘판매업등록을 한 자중 정부  
묘목생산자

##### ○ 우선순위

전년도 예산 부족등으로 탈락된 적격자

##### ○ 선정절차

신 청 → 선정권자 → 심사결정 및 예산요구 → 사업심의 예산확보 시도배정  
(사업자) (시장·군수) (도지사) (산 립 청)

#### 라. 사업시행

#####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정부조림계획에 의거 시·도지사가 정부지정 묘목생산자별로 사업량을  
지정한 후 책임생산토록 추진

#####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대출 신청자료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사업비 지원방법

- 지원한도 : 사업자당 사업비 총액의 100백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융자 6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금리 연 5%(3년거치 2년상환)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책임자

시장·군수, 관할 임업협동조합장, 한국양묘협회장

##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나. 신청자격

- 산림법 제45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종묘판매업등록을 한 자중 정부 지정묘목 생산자

다. 신청절차 : 정부지정 묘목생산자 지원

- 신청 → 시·군 → 심사결정 → 결정내역 통보  
(사업자) (도지사) (신청자, 임업협동조합)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대출신청자료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시·군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시 신청서를 제출 반영된 사업자
  - 전년도 예산부족 등으로 탈락된 적격자
- 선정절차
  - 사전신청 → 심사결정 및 예산요구 → 사업심의예산확보  
(사업자) (도지사) (산림청)

## 134 산림병해충방제 (공공)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산림청 보호과입니다.

1. 목 적 : 각종 산림병해충 피해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국토경관보전

### 2. 추진방향

- 적기예찰,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방제효과증대 및 신종병해충 발생차단
-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방제사업은 우량소나무림 집단지, 관광사적지, 국·철도변 등의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집중방제
- 산주의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잣나무넓적잎벌, 밤나무해충 등은 항공기 우선투입으로 적기방제 실시
- 천적방사, 저공해약제사용 등 생태적방제 확대

3. 근거법령 : 산림법 제109조 및 동 시행령 제108조의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 사업량 (천ha)	3,312	1,067	251	258	248	1,488
-솔잎혹파리	1,340	315	111	123	113	678
-솔껍질깍지벌레	176	39	14	11	16	96
-소나무재선충	35	10	1	3	3	18
-흰불나방, 기타	1,761	703	125	121	116	696
○ 사업비 (백만원)	796,491	118,821	46,695	60,489	81,498	488,988
-일반회계(보조)	231,817	44,504	16,668	20,490	21,450	128,700
-지방비	458,397	58,548	21,372	29,702	49,825	298,950
-자부담	15,051	4,531	1,717	1,803	1,000	6,000
-국특회계	91,231	11,238	6,938	8,494	9,223	55,338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설명

##### ○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각지벌레 피해목벌채

-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각지벌레 피해지로서 소생가망이 없는 피해도 “중”이상지역은 벌채제거후 병해충에 강한 경제수종으로 갱신조림
- ha당 인건비 10인지원(412,180원) (국고보조50%, 지방비보조50%)
- 솔잎혹파리, 솔껍질각지벌레 피해발생지로서 해당 시·군의 벌채대상 물량배정 범위내에서 피해도 “중”이상지역

#####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밤나무해충은 소유자가 자력방제원칙. 다만, 지상방제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소유자가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때에는 헬기지원 가능범위내에서 헬기지원
- 1단지 5ha이상 집단조림지. 다만, 항공방제 대상구역내에 개재되어 있는 5ha 미만의 조림지는 대상지로 정할 수 있음.
- 평균수고가 3m 이상되는 조림지로서 경사가 급하여 지상약제살포가 어려운 조림지
- 약제대, 인건비 및 부대경비는 소유자가 부담

#### 나. '9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 (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46,700	6,158	1,793	1,793	-	2,562	1,803
- 솔잎혹파리 피해목벌채	5,000	2,503	1,031	1,031	-	1,472	-
- 솔껍질각지벌레 피해목벌채	3,700	1,852	762	762	-	1,090	-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38,000	1,803	-	-	-	-	1,803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나.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보호과 (02-961-2335~6)
- 시·도 : 산림과 (녹지과)
- 시군자치구 : 산림과 (녹지과)

다.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피해목벌채

- 시장·군수는 전년도 추기에 피해발생상황조사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보고 (시·군·구→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구 피해발생상황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을 검토·조정 보고 (시·도 → 산림청)
- 산림청장은 시·도 피해상황 및 사업계획을 검토·종합, 사업계획 수립 시달 (산림청 → 시·도 → 시·군·구)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방제 전년도 9월10일까지 항공방제신청 (산주 → 시·군·구)
- 시장·군수는 현지를 확인하여 항공방제 대상지 적정여부를 판단,항공방제계획서를 작성 시·도에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항공방제 계획을 검토·조정하여 산림청에 보고
- 산림청장은 시·도 방제계획 및 헬기지원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달 (산림청 → 시·도 → 시·군·구)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

○ 사업비 지원방법

- 피해목벌채
  - ha당 인건비 10인 지원(412,180원) (국고보조50%, 지방비보조50%)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헬기 무상지원 (헬기 지원가능범위내에서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나. 보고, 기타

-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벌채 및 밤나무해충 항공방제실적 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구

나. 신청자격

- 방제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임야소유자

다. 신청절차

- 피해목벌채
  - 벌채희망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군수가 대상지를 조사하여 확정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밤나무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전년도 9월 10일까지 항공방제 신청서를 조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라. 구비서류

- 피해목벌채신청서 1부. <산림법 별지 제67호서식>
- 피해목벌채신고서 1부. <산림법 별지 제69호서식>
- 항공방제신청서 1부.<산림병해충방제요령(산림청 훈령 제548호) 서식7호>

마. 대상자선정

○ 선정기준

- 피해목벌채

- 솔잎혹파리 피해임지중 피해도“중”이상지역으로 소생가망이 없는 임야
- 영림계획서에 의거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임야
- 솔잎혹파리 피해도 “중”이상지역중 벌채희망자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1단지 5ha이상 집단조림지. 다만 항공방제 대상구역내에 개재된 5ha 미만의 조림지는 대상지로 정할 수 있음.
- 평균수고가 3m 이상되는 조림지로서 경사가 급하여 지상약제살포가 어려운 조림지

○ 우선순위

- 피해목벌채

- 특정지역 : 주요 관광사적지, 명승고적지, 고속도로, 국·철도변 등 경관보전지역
- 주요지역 : 병해충별 선단지, 송이생산지, 천연보호림, 채종림, 우량 소나무림 등 자원보존지역
- 일반지역 : 특정지역 및 주요지역 이외의 지역

- 밤나무 항공방제

- 독립가, 산림계, 국가유공자 또는 비영리 공익법단체가 소유한 조림지
- 피해규모, 피해정도 및 개화 결실기에 따라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림지
- 조림년도, 평균수고,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상방제난도

(難度)가 높은 조림지

- 1ha 미만의 영세소유자가 공동으로 조성한 집단조림지
- 산림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
- 정부의 유실수 식재 권장시책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아 조성한 조림지

o. 선정절차

- 피해목별채

- 별채 희망임지중 시장·군수가 대상지를 조사하여 피해목별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 밤나무 항공방제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전년도 9월 10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항공방제신청서를 조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
- 항공방제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현지를 확인하여 항공방제대상지의 적정여부를 판단
- 시장·군수는 현지 확인한 결과 항공방제대상지로 적합한 때에는 밤나무해충 항공방제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계획서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시·군별 항공방제계획을 검토 조정하여 산림청에 보고, 산림청에서는 시·도사업계획 및 헬기지원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사업계획 확정시달